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연구

- 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목 차

요 약	i
제 1 장 서론	1
1 산재보험 적용확대의 의의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제 2 장 산재보험 적용확대의 현황	4
1. 한국 산재보험의 적용확대 과정	4
2. 산재보험 미적용 취업자	8
3. 외국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12
제 3 장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현황 조사	24
1. 적용제외 근로자	24
2.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28
3. 특수고용 종사자	43
제 4 장 적용확대 방안	53
1. 적용확대의 순서 선정	54
2. 현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57
3.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60
4. 자영업자 및 농민 산재보험 적용방안	71
제 5 장 요약 및 결론	87
참고문헌	95
부 록	103

표 목 차

<표 2-1> 산재보험의 기업규모별 및 업종별 적용확대 추이	5
<표 2-2> 임금근로자 및 취업자 중 산재보험 적용률	8
<표 2-3> OECD 국가의 산재보험 적용범위	13
<표 2-4> 피고용인 수에 대한 예외 조항	19
<표 2-5> 농업 피고용인에 대한 적용현황	20
<표 3-1> 산재보험 적용제의 사업의 종류	25
<표 3-2> 건설업 공사규모별 계약실적	26
<표 3-3> 공사규모별 공사기간(건수)	28
<표 3-4> 농림업 종사자의 수	29
<표 3-5> 농업용기계 전국 보유현황: 1980~2000	30
<표 3-6> OECD 국가의 농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현황	31
<표 3-7> 농업종사자 산업재해에 대한 실태조사	32
<표 3-8>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표	33
<표 3-9> 사고의 심각한 정도	33
<표 3-10> 사고발생시 치료비 해결방법	34
<표 3-11> 재해대비방법	35
<표 3-12> 재해시 필요한 서비스 (최우선 순위의 답변)	35
<표 3-13> 산재보험의 인지 여부와 가입의사	36
<표 3-14> 산재보험 보험료에 따른 가입의사	37
<표 3-15> 각 산업별 총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율	38
<표 3-16>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 국제비교: 1999	39
<표 3-17>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체계	40
<표 3-18> 민간 상해보험 가입 여부 및 개수	41
<표 3-19> 재해 발생시 필요서비스 (최우선 순위의 답변)	42

<표 3-20> 산재보험 필요성 및 가입의사	43
<표 3-21> 업무관련 질병·부상·사고 서류정리 여부	47
<표 3-22> 사고·질병·부상 대비 회사의 조치	49
<표 3-23> 실제 사고·질병·부상에 대한 회사의 해결방법 (중복응답)	50
<표 3-24>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복응답)	51
<표 3-25>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견해	52
<표 4-1> 적용확대 순서 선정의 기준	56
<표 4-2> 일일 고용자 고용경험	59
<표 4-3>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59
<표 4-4>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재직기간	63
<표 4-5> 소득증명서 존재 여부	64
<표 4-6> 산재보험 적용시 바람직한 방식	65
<표 4-7> 계절별 소득편차의 유무와 편차 정도	68
<표 4-8>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71
<표 4-9> 연령계층별 농가 및 자영업자 (무급종사자 포함)	72
<표 4-10> 근로자 종류·경제활동 여부별 재해시 적용 사회보험 및 급여	72
<표 4-11> 노령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비율	74
<표 4-12> 농민의 월소득	78
<표 4-13> 근로시간 형태	78
<표 4-14> 중소기업주 기준임금: 2000	79
<표 4-15> 농민 지병 보유율	80
<표 4-16> 농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81
<표 4-17> 직업의 환경조건	83
<표 4-18> 비임금근로자의 연령별 분포	84
<표 4-19>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86
<표 5-1> 산재보험 적용방안	94

<부표 1> 연도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비율	97
<부표 2> OECD 국가의 산재보험 적용범위	98
<부표 3> 공사규모별 공사기간(금액)	99
<부표 4> 농민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0
<부표 5> 현재 재해보장방식과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견해 (골프장사업주)	101
<부표 6> 현재 재해보장방식과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견해 (학습지회사)	102
<부표 7> 현재 재해보장방식과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견해 (보험사)	102

그림목차

[그림 2-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수의 증가	6
[그림 2-2]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의 증가	7
[그림 2-3] 총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비율	11
[그림 3-1] 연도별 1 ha 당 농약소비량	30
[그림 3-2] 연도별 비료소비량	31

요 약

산재보험제도는 그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00년 7월 이후는 소수의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하면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포괄범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적용범위의 확대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및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현대 산업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며, 보상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잘 기능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작업중 재해를 당할 수 있는 대상은 비단 근로자뿐만이 아니다. 혼자서 혹은 소수의 가족종사자만을 거느리고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농부, 직접 생산 과정에 참여하여 노동한다는 면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구분이 모호한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자영업자로 사업주와 계약관계를 맺고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일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이 작업중 재해로 인해서 건강 및 근로능력이 상실될 경우 겪게 될 어려움은 근로자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집단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작업중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과 같은 집합적 보장기제가 부재한 채, 보장은 개개인의 사적 책임으로 되어 있다. 즉, 각 개인이 저축이나 보험을 통해서 스스로 보장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산재사고나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충분한 치료조치 어려운 경우도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중단 때문에 빈민층으로 전락하여 국가의 공적부조 대상자가 될 가능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작업중 재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개인적 대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 영세사업주,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등에 대해서 산재보험의 보호체계 내로 포괄할 필

요성은 자명하다 하겠다. 2000년 현재 산재보험이 포괄하는 인구를 보면 비록 거의 모든 근로자를 포괄한다고는 하지만 자영업자를 포괄하지 못한 까닭에 총 취업자 중 45%만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을 산재보험 미적용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로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되었던 근로자들은 첫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연면적 100평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둘째,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셋째, 가사서비스업 종사자이다. 이들이 현재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가장 큰 이유는 적용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로 인한 적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농민과 자영업자의 경우는 그간의 산재보험 적용이 근로자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이었고,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은 근로자적인 성격을 갖는 면이 있지만 그간 자영업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적용제외되었던 것이다.

적용확대에서 우선 생각할 점은 현재까지 적용제외된 대상을 모두 동시에 산재보험 적용범위로 포괄할 것인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포괄할 것인가인데, 이는 행정적인 능력과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일이다. 적용확대에 있어서 그 어떤 국가나 제도도 모든 집단을 일시에 적용범위로 포괄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보다 단시간 내에 모든 집단을 적용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적용확대 자체는 집단별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보다 무리없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진다.

타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높고, 적용확대가 실시될 경우 실질적인 보호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집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볼 때, 현재 적용제외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확대하고, 그 다음에 농민 및 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마지막으로 일반 자영업자의 순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

로 사료된다.

각 집단별로 적용확대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산재보험체제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이들이 그간 적용제외된 이유가 행정적인 어려움 때문으로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기존 근로자 대상의 산재보험체제와 다른 구조로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미적용 재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산재보험체제의 큰 틀이 바뀌지 않는 한 이들에게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농림업 종사 근로자 중 품앗이 근로자의 경우는 품앗이 근로자를 쓰는 농가 대부분이 상시 근로자 1인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적용제외시키지 품앗이일을 하는 농업근로자 자신이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해서 보호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율제도 또한 기존의 업종 요율을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을 설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이들이 자영업자로서의 속성과 근로자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지녔다는 점이다. 기존의 산재보험체제는 적용대상이 모두 근로자라는 것을 가정하고 제도가 설계되었고, 단지 중소기업주의 경우에만 사업주에 대한 적용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어떤 체계를 주로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산재보험 구조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적용의 실효성일 것이다. 즉, 산재보험 적용확대가 단지 제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작업중 재해를 실제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산재보험의 적용에 대해서 회사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과 이들의 근로자성 인정과의 관련성 때문일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들에 대

한 산재보험의 적용은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산재보험의 구조도 근로자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장의 실효성을 가장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우선은 산재보험법에 특별조치로 삽입하여 강제적용시키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재보험의 비용부담 방안에서도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이 자영업자적 성격과 근로자적 성격을 모두 가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인별 관리제도가 구축되어야 실시가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따르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현재는 불가능하고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인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개인 부담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관리의 어려움과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의 조직적 반발 가능성 때문에 적용의 의의와 성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제도는 일반 근로자 대상 산재보험제도와 거의 유사한 구조로 채택하되 사업주에 대한 일정 정도의 조세 감면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이들에 대한 소득의 산정은 기존 근로자의 평균소득 산정방식이 아닌 연평균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의 인정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초기에 업무의 특성을 감안한 지침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영업자 및 농민의 산재보험 적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자영업자를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로 포괄할 것인가,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당장은 재해의 위험이 큰 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 체계에서 자영업자 모두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약 56% 증가하게 된다. 비록 가입대상 모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산재보험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인력, 전산망 등 상당한 행정적 준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

다. 행정적 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목표는 전체 자영업자를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망 속으로 포괄하는 것이지만 당장은 재해율이 높은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산재보험에 적용시키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우선 농민과 재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직업사전에 분류된 직종을 우선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적용방식은 자영업자는 자신이 곧 고용주이기 때문에 재원부담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면에서 임의적용하도록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용 신청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별 무리 없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이 때 가입이 가능한 연령은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농민의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이 약 절반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65세까지로 하되 현재 공적연금 수급자는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았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결코 쉽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소득은 중소기업주와 마찬가지로 기준임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요율도 해당 산업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단, 농민에 대해서는 농촌경제의 악화로 인한 농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 경제적 어려움, 산재의 심각성 및 식량안보적 차원에서의 농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정부가 농민의 산재보험료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때 정부가 농민의 산재보험료에 대해서 보조해 줄 경우 농민의 산재보험 적용방식을 강제적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 적용방안>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 연구

구조	적용제외근로자	특수고용 관계 종사자	농민	고위험자영업자
강제적용	강제적용	강제적용	임의적용	임의적용
적용연령	규정없음	규정없음	65세까지. 단 연금 수급자 제외	65세까지. 단 연 금 수급자 제외
재원부담 방안	고용주 부담	1안: 고용주 전액 부담(조세감면 고 려), 2안: 종사자 일부 부담	1안: 피보험자 2안: 일부정부보조	피보험자 본인
요율결정	해당산업 요율	해당산업 요율	해당산업 요율	해당산업 요율
소득결정	기존방식 사용	연평균소득	기준소득사용	기준소득사용
급여수준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하게	기존과 동일하게	기존과 동일하게

구조	적용제외근로자	특수고용 관계 종사자	농민	고위험자영업자
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농수협 대행가능성 검토	근로복지공단, 사무조합 적극활 용
입법화 방식	적용제외 조항 해지	우선 산재보험법 상의 특별조항 마 련		
입법화 시기	행정적 준비 이 후 즉시	노사정 합의 도출 이후	충분한 조사 및 대 책마련 이후	충분한 조사 및 대책마련 이후
비교	타 근로자와 동 일한 방식		중소사업주와 유사 방식	중소사업주와 유 사방식

제1장 서론

1. 산재보험 적용확대의 의의 및 필요성

산재보험은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작업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서 치료와 금전적 손실을 보장해 주고, 이로 인한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광업과 제조업에 대해서, 또한 지불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대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이루어졌으나, 지속적으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한 결과 2000년 7월 이후는 거의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로 포괄되고 있다.

이러한 적용범위 확대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및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현대 산업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며, 산재보험 제도가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보장책으로서 그간 잘 기능해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가 근로자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근로자 이외에도 작업으로 인한 부상 및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건강 및 금전의 손실이 있을 경우 생활 자체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인구집단은 혼자서

혹은 소수의 가족종사자만을 거느리고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농부, 직접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노동한다는 면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구분이 모호한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자영업자로 사업주와 계약관계를 맺고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일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현재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는 집단이지만 작업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이들이 입게 될 타격이 근로자와 유사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이들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대비는 국가가 집합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책임으로 남겨져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중 사고발생으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 및 소득의 중단시 이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가진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이들 각 개인이 저축이나 보험을 통해서 스스로 보장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산재사고나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치료와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어려움은 물론, 이로 인해서 빈민층으로 전락해서 국가의 공적부조 대상자가 됨으로써 다시 국가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선진 각국에서는 작업중 재해로 인한 타격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민, 자영업자, 영세사업주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이들에 대한 집합적 보장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이외에도 영세사업주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지만, 농민이나 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는 아직 그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전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라는 획기적 전환을 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산재보험제도로 포괄되지 못하고 있으나 작업중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타격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농민,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은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와

는 다른 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산재사고로 인한 타격이 커서 집합적 보장책이 필요하다는 면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자신이 곧 사업주라는 면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는 일반 근로자와는 차별성을 보인다. 즉, 이들을 위한 집합적 보장책은 재원의 출처 또한 이들 자신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산재보험제도의 내용이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론하게 한다.

이 경우 무조건적으로 기존의 제도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실태 및 생활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보다 적합한 제도에 대한 모색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이들을 포괄하는 산재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첫 걸음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제도 정착의 역사가 길고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외국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찰과 이해가 필수적일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직까지는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로 포괄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근로자 및 농민, 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선 산재보험 적용확대의 의의 및 필요성, 이미 이들에 대한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연구, 이들 대상인구집단의 현황에 대한 조사 등을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2장

산재보험 적용확대의 현황

1. 한국 산재보험의 적용확대 과정

산재보험제도는 1964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시켜 왔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는 전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확대되어서 근로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로 포괄되고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 시행 초기에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사업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었는데,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다. 산재보험이 처음 실시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되고, 나머지 사업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후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산재보험 적용업종의 확대 과정을 보면 우선 산재보험 실시 2차년도인 1965년에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을, 1969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신업을, 1982년에는 임업 중 벌목업을, 1983년에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을 추가하였고 1989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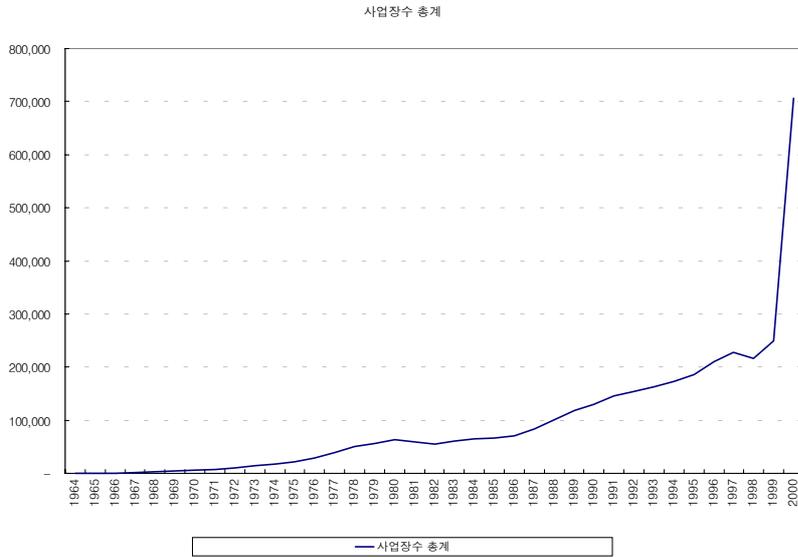
년도에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까지 확대하였고 1998년 7월 1일부터는 금융·보험업을 추가하였다.

<표 2-1> 산재보험의 기업규모별 및 업종별 적용확대 추이

	기업규모	업종관련 비고
1964	500인 이상	광업, 제조업
1965	200인 이상	전기·가스업, 운수·보관업 신설
1966	150인 이상	
1967	100인 이상	유기사업(연간 25,000인 이상)
1969	50인 이상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설비업, 통신업 신설
1974	16인 이상	
1976	16(5)인 이상	광업, 제조업 중 화학, 석유, 석탄, 고무, 플라스틱제조업은 5인 이상
1982	10(5)인 이상	별목업 추가
1983	10(5)인 이상	농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 추가
1986	10(5)인 이상	베니아판제조업 등 14개 업종은 5인 이상
1987	10(5)인 이상	목제품제조업 등 20개 업종은 5인 이상
1988	5인 이상	전자제품제조업 등 16개 업종 5인 이상
1991	5(10)인 이상	광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10인 이상 확대
1992	5인 이상	광업, 임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5인 이상
1996	5인 이상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98	5인 이상	금융 및 보험업
2000	1인 이상	계속사업 전체(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은 5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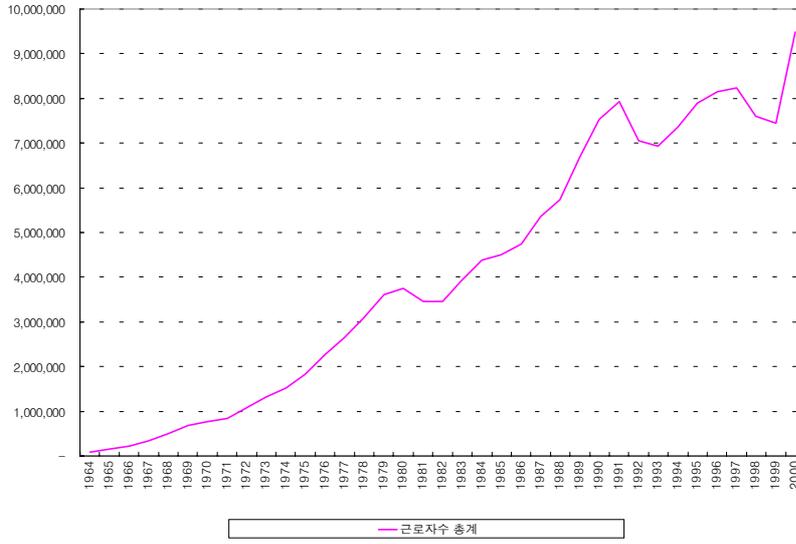
자료: 노동부, 『2000년 산재보험사업연보』, 2001.

[그림 2-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수의 증가



산재보험 적용규모의 확대 과정을 보면 일반업종의 경우 시행 초년도인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기업에 강제적용되었으나 이후 1965년 상시 근로자 200인 이상 기업, 1966년 상시 근로자 150인 이상 기업, 1967년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1968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1973년 상시 근로자 16인 이상 기업, 1976년 광업과 제조업 중 화학, 석탄, 석유,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 이후에도 적용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88년까지 연차적으로 전 업종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고, 2000년도에는 적용범위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1998년도부터는 현장에서 실습중인 학생 및 직업훈련생과 해외파견자, 종업원수 5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그림 2-2]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의 증가



<표 2-2> 임금근로자 및 취업자 중 산재보험 적용률

	총 취업자	임금근로자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임금근로자중 산재보험 적용률	총 취업자중 산재보험 적용률
1970	9,617	3,746	779	20.8	8.1
1975	11,692	4,750	1,836	38.7	15.7
1980	13,683	6,464	3,753	58.1	27.4
1985	14,970	8,104	4,495	55.5	30.0
1987	16,354	9,191	5,357	58.3	32.8
1988	16,870	9,160	5,744	62.7	34.0
1989	17,511	10,354	6,688	64.6	38.2
1990	18,036	10,865	7,543	69.4	41.8
1991	18,576	11,287	7,923	70.2	42.7
1992	18,961	11,568	7,059	61.0	37.2
1993	19,253	11,751	6,943	59.1	36.1
1994	19,837	12,297	7,363	59.9	37.1
1995	20,377	12,736	7,894	62.0	38.7
1996	20,764	13,043	8,157	62.5	39.3
1997	21,048	13,228	8,237	62.3	39.1
1998	19,994	12,191	7,600	62.3	38.0
1999	20,281	12,522	7,441	59.4	36.7
2000	21,061	13,142	9,486	72.2	45.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연보』 각연도.

2. 산재보험 미적용 취업자

현재 임금근로자로 구분되어 있으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연면적 100평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둘째,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셋째,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이들이 현재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가장 큰 이유는 적용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로 인한 적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간 같은 이유로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까지도 적용대상으로 포괄된 현 시점에서, 이들에 대해서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 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비임금근로자로서 적용제외되고 있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아서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현재 79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전체 취업자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는 그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자영업주란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 또는 상점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무급가족종사자란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주당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를 말한다. 이들은 근로를 한다는 면에서는 근로자라 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바로 산업안전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산재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또한 자신에게 있다는 면에서는 고용주적인 특성을 갖는다.

산재보험의 구조를 보면 산재보험 각출금은 고용주가 내고 급여는 임금근로자가 수혜하는 기여자와 급여자가 상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자영업자를 산재보험에 포괄하게 한다면, 자영업자는 자신이 스스로 고용주이자 근로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각출금 납부 주체와 보험급여 수급 주체가 동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말로 하면 자영업자 스스로 자신의 산재위험에 대해서 보험금을 납부하여 급여를 수급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어떻게 본다면 이미 전국민 의료보험이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자영업자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 의료보험을 통해서 의료적 처지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자신이 재정적 부담을 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급여 내용은 의료서비스로 인한 비용 일부만을 부

담하는 의료보험과는 상당히 차별적이다. 산재보험의 급여 내용을 보면 의료적 처치에 대해서는 100% 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며(요양급여), 이외에 소득보장적인 내용을 가진 급여들이 있어서 재해로 인한 요양, 장애, 사망시 소득보전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고(휴업급여, 장애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있으며, 이 이외에도 간병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으로써 작업중 재해로 인한 소득 및 건강 상실과 관련된 모든 필요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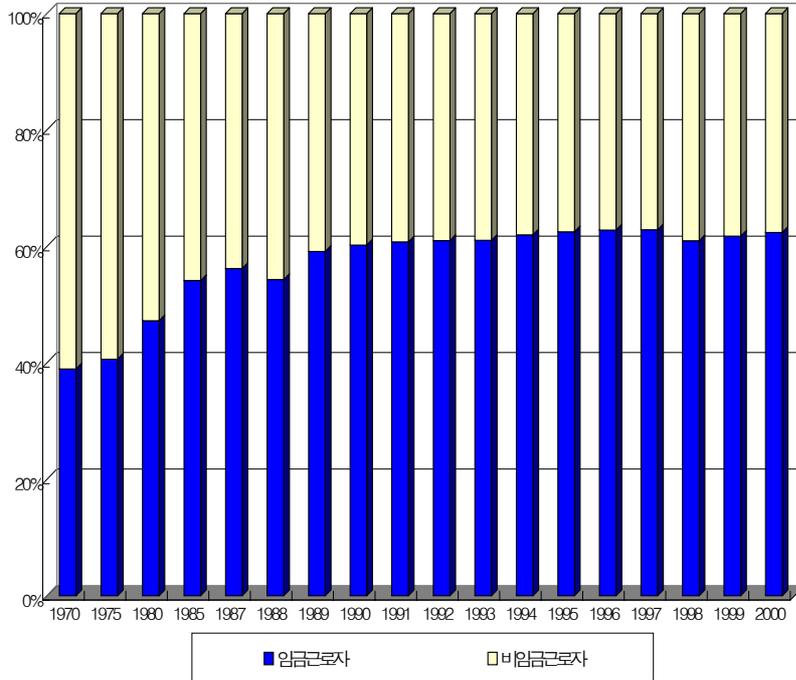
따라서 산재보험의 급여 내용은 의료보험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그 수준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자영업자 또한 소득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다르지 않다고 보면 이들이 작업중 사고를 당할 경우 겪게 되는 어려움 또한 임금근로자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 산재시 발생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산재보험이 모든 임금근로자를 다 적용시키고 있다 할지라도 약 40%의 취업자는 작업중 일어나는 재해에 대해서 의료보험 이외에는 사회적 대비책을 갖지 못하고 개인적인 대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체 취업자의 약 40%에 이르는 비임금근로자에게도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전 국민의 복리를 책임지는 최후의 피난처라는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전체 취업자 중 어떤 사람에게 먼저 산재보험 가입의 기회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일 것이다.

자영업자가 100%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는 누구에게나 예상되는 어려움이라는 면에서 강제보험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사회보험의 도입 자체가 국가의 책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산재사고의 경우는 발생확률이 적다 할지라도 발발시 당하는 어려움은 다른 어떤 사회적 위험보다 적지 않으므로 적어도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

입할 기회는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영업 중에서도 재해의 위험성이 특히 높은 업종의 경우는 산재보험의 필요성이 더 크다 하겠다.

[그림 2-3] 총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비율



이러한 적용방식의 선택은 산재보험이 작업중 재해에 대한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체에 일시에 도입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적용할 경우 적용확대의 효과가 크기 위해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이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과정을 보더라도 광업, 건설업 등 위험이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먼저 보호의 범주로 포괄하였고, 건설업의 경우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 때문에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음에도 원도급업체에게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산

재보험까지도 한꺼번에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까지 마련하여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산재의 위험이 높은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조치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골프경기보조원, 학습지도사, 보험설계사 등 소위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로 명명되고 있는 업종 종사자의 경우는 현재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임금근로자적인 특성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3. 외국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가. OECD 국가의 산재보험 적용범위

산재보험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으로서 처음 도입시에는 피고용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적용범위를 넓혀서 농민, 자영업자 등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더 나아가 가정주부, 학생 등까지도 작업중 재해를 당할 경우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는 국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OECD 30개국의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살펴본 결과 전국민을 적용범위로 포괄하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취업자뿐만 아니라 가정주부, 학생 등 미취업자도 일부 적용범위로 포괄하는 국가는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있으며, 취업자에 대한 적용 현황을 보면 자영업자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가 23개국, 피고용인만을 대상으로 한 국가가 7개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고용인만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한 7개국 중에서 피고용인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한 국가가 3개국, 기업규모 및 근로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서 전체 피고용인 중 일부만을 적용대상으로 한 국가가 4개국으로 나타났으며, 피고용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도 대상으로 한 23개국 중에서는 자영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가 14개국, 자영업자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국가

가 9개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면 OECD 국가 중 약 77%의 국가가 피고용인은 물론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피고용인에 대해서도 일부만 적용하는 국가는 전체의 13%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OECD 국가의 산재보험 적용범위

	취업자				미취업자 (일부 혹은 전체) ³
	피고용인		피고용인 + 자영업자		
	일부 적용	전체 적용	일 부 ²	전 체	
국가	한국, 캐나다, 아일랜드, 미국 ⁴	벨기에, 스페인, 영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일본, 터키,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이스랜드, 체코, 멕시코 룩셈부르크, 프랑스 슬로바키, 스웨덴, 네델란드 ¹ , 뉴질랜드, 폴란드, 그리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30개국	4개국 (13%)	3개국 (10%)	9개국 (30%)	14개국 (47%)	8개국

- 주: 1) 네델란드는 질병과 장애프로그램하에서 전국민이 일괄 적용됨.
- 2)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영업은 자발적 가입이 가능
- 3) 미취업자에는 학생, 주부, 유치원생 등이 포함됨(네델란드, 뉴질랜드-전국민 대상/독일, 룩셈부르크-학생, 주부, 가사노동자/오스트리아, 헝가리, 노르웨이-학생, 덴마크-부모의 산재로 인한 선천성 장애자). 여기에서 미취업자가 포함된 국가는 앞의 30개국과 중복됨.
- 4) 미국은 각 주에 따라 농민, 가정부, 비정규근로자, 3~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제외하는 주도 있음.

자료: Social Security Throughout the World

나. 일본, 독일, 미국, 기타 EU 국가의 자영업자에 대한 적용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용인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이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각 국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

일본은 자영업자 중 농민과 일부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기술자만이 일반 산재보험제도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가입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임의가입시는 개별 가입이 불가능하고, 동업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가 고용주의 역할을 하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가) 특별가입제도의 취지

산재보험은 원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서 이들의 산재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자 예를 들어 사업주 및 자영업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주나 자영업자 중 업무실패나 재해발생 상황 등을 미루어볼 때 근로자에 준한 산재보험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산재보험제도 본래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또 산재발생시 업무상 외의 인정 등 보험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히 산재보험의 가입을 인정하고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를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 특별가입제도는 1965년에 만들어졌지만, 특별가입제도를 만들기 이전 이미 목수, 미장이, 비계공, 석공 등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 관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동업 조합을 통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특별가입제도는 이것을 확대해서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 특별가입제도 가입대상

특별가입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업무의 실패, 재해의 발생상황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 적용근로자

에 준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가? 둘째, 업무의 범위가 비록 근로계약, 노동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실태에 있어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과 더불어 보험관계의 적정한 처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이상과 같은 기준을 갖고 정한 특별가입제도의 대상은 자영업자 중에서도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과 일부 기술자에 한정된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자영업자 중 다음의 일을 하는 자: ① 자동차를 사용하는 여객, 화물의 운송사업 ② 토목, 건축 기타 공작물의 건설, 개조, 보존, 수리, 변경, 파괴 또는 해체 그리고 그 준비의 작업 ③ 어선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채집작업 ④ 임업사업 ⑤ 의약품의 배치, 판매사업 ⑥ 재생용 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선별, 해체 등의 사업

(2) 농민 중 재해의 위험이 높은 다음과 같은 작업에 종사하는 자: ①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경작 등 작업 ②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의 작업 ③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1972년 정령제 318호)에서 지정된 자 ④ 농약 살포작업 ⑤ 소, 말, 돼지와 접촉, 또는 그럴 위험이 있는 작업.

(3) 가내하청근로자 및 보조자: 가내근로의 경우 작업장소가 통상 가정 내이고 재해에 대한 업무기인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다음의 작업만 해당된다: ① 프레스기계, 금형기계, 선반, 보루반, 또는 프라이스반을 사용하는 금속, 합성수지, 가죽, 고무, 천, 종이의 가공작업 ② 연삭기 또는 바흐반을 사용해서 하는 연마, 연삭, 그리고 녹인 납을 사용해서 하는 금속의 담금질 작업으로서 금속제양식기, 칼, 밸브, 코크의 제조·가공에 관계된 것 ③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물을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화학물질, 가죽제 및 천종류의 이물, 구두, 보자기류, 복장용 벨트, 장갑, 미트 또는 목재 및 합성수지제의 칠기의 제조 또는 가공에 관계된 것 ④ 진폐법의 연화합물을 함유하는 유약을 사용하는 시유, 연화합물을 함유하는 물감을 쓰는 그림작업 또는 해당 작업을 행한 것의 소성작업에 있어 도자기의 제조에 관계되는 것 ⑤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합사기, 연사기, 직기를 사

용하는 작업

- (4) 노동조합 등의 상근직원
- (5) 직장적용 훈련종사자, 사업주단체 등의 위탁훈련 종사자

다) 특별가입제도 운영방식

특별가입은 가입대상 개개인이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구성원이 되는 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단체는 보험료의 납부 등 사업주로서 일체의 보험사무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하나하나의 사업마다 보험가입 수속을 하는 것이 지극히 번거롭기 때문에 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득의 계산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산재보험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일액을 12등급으로 지정 고시하고, 특별가입자가 자신의 급여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의 변경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지방근로기준국장에게 신청하면 되는데, 한 번 결정되면 당해 보험연도에서는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독일

독일은 자영업자와 농민뿐만 아니라 가내하청업자, 아동 및 학생에게 까지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농민의 경우는 분리된 산재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제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가) 산재보험 적용범위

독일에서 산재보험 강제적용 대상자는 피고용인, 직업훈련자, 장애인전용사업장 종사자, 가내수공업자 및 가족종사자, 농민 및 가족종사자, 어민 및 가족종사자, 유치원·탁아소의 아동, 학생,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사업주 및 사업장 방문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임의가입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피고용인뿐만 아니라 농민, 학생, 자원봉사자 등 자영업자 및 비취업자에게까지 산재보험을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농민의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농업부

문의 사업주 및 당해 사업에 같이 종사하는 사업주의 배우자 ② 농업부문 사업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업주의 가족 ③ 농업부문 사업에서 주식회사 또는 개인회사의 법적 형태로 정규적으로 사업주와 유사하게 종사하는 자영업자 ④ 농업부문 사업에서 직접 농업의 안전, 감독 또는 장려에 주로 기여하는 명예직에 있는 자 ⑤ 농업부문 직종연합에서 명예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단, 당해 농업부문 산재보험조합이 이 사업을 관할하는 경우에).

또한 농민을 제외한 기술자나 상인과 같은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이었으나 2000년부터 일정소득 이하의 유사자영업자인 경우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에 강제가입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이는 산재 등 생활상의 위험에서 이들 유사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일정소득 이하의 유사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이는 사회법전 제4권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1999년 12월 22일 개정된 연금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저소득 유사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을 다룬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고용관계에 있음이 증명되는 자영업자 또는 유사자영업자(arbeitnehmerähnliche Selbständige)이다.

산재보험 적용범위는 2000년 현재 월소득이 630마르크 이상 4,480마르크(구서독 지역, 구동독 지역은 3,640마르크 미만까지임) 미만인 유사자영업자이다. 유사자영업자의 구분은 추정규칙(Vermutungsregelung)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추정규칙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이 중 세 가지 이상 해당되면 보험가입 의무가 있는 유사자영업자로 간주된다. ① 월 630마르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피용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② 지속적으로 한 사람의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 ③ 일반적 피용자에게 전형적인 일을 하는 경우 ④ 사업주에 전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⑤ 외형적으로 한 사업주에게 고용관계에 의해 수행한다고 간주되는 일을 하는 경우.

이들에게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다는 것은 4대 보험 모두에 가입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타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요율을 노동자와 사용자로 추정되는 자(Auftraggeber)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조항을 두어서 보험가입의 의무에서 면제시켜 주고 있다. ① 신규 창업을 한 경우 3년간 보험가입 면제 ② 58세 이상인 자 ③ 법개정 이전(시점 1998년 12월 31일)에 이미 자영업자이고, 1949년 1월 2일 이전 출생한 자로서 1998년 12월 10일 이전 이미 생명 또는 연금보험계약을 맺은 자 ④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면서 유사한 노후보장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이상과 같은 유사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조항은 유사자영업자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보호의 필요성 또한 높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치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한국의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3) 미국

미국의 경우 자영업자 산재보험의 강제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농업 피고용인, 가사종사자가 적용제외되는 수가 있는 실정이다. 각 주의 산재보험 적용현황을 기업규모, 농업 피고용인, 가사종사자 적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기업규모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현황

기업규모에 따라 적용제외되는 근로자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이를 보면, 대부분의 주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예외를 두고 있지 않지만, 아칸소, 조지아, 미시간,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위스콘신에서는 상시근로자 3인 미만 사업장,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에서는 상시근로자 4인 미만 사업장, 앨라배마, 미시시피, 미주리, 테네시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나) 농업 피고용인에 대한 적용현황

농업 피고용인에 대한 산재보험은 40개 주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 중 애리조나, 아이다호, 캘리포니아, 하와이, 콜로라도, 코네티컷, 콜롬비아 지역, 메사츄세츠, 몬타나, 뉴햄프셔, 뉴저지, 오하이오, 오레곤, 버진 아일랜드 등 14개 주에서는 다른 피고용인과 마찬가지로 강제적용이 되고 있으며, 알래스카, 플로리다, 조지아, 미주리, 아이다호, 일리노이, 아이오와, 메인,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건, 유타, 미네소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푸에르토리코,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24개 주에서는 다른 피고용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설정되어 있지만 강제적용되고 있으며, 델라웨어와 텍사스에서는 임의가입되고 있으며, 앨라배마, 아칸소,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멕시코, 테네시, 노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13개 주에서는 농업 피고용인

<표 2-4> 피고용인 수에 대한 예외조항

	피고용인 수에 따른 예외가 없는 주	일정 미만 피고용인을 고용한 사업장을 면제해 주는 주		
		3인 미만	4인 미만	5인 미만
주	알래스카, 뉴햄프셔, 네브래스카, 뉴저지, 애리조나, 뉴욕, 몬타나, 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 네바다, 콜로라도, 오하이오, 코네티컷, 오클라호마, 델라웨어, 오레곤, 콜롬비아 지역, 펜실베이니아,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아이다호, 사우스다코타, 일리노이, 텍사스, 인디애나, 유타, 아이오와, 버몬트, 캔자스, 버진 아일랜드, 켄터키, 메인, 루이지나, 웨스트버지니아, 워싱턴, 와이오밍, 메릴랜드, 메사츄세츠, 미네소타,	아칸소, 조지아, 미시간,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위스콘신	로드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앨라배마, 미시시피, 미주리, 테네시
	39개 주	7개 주	3개 주	4개 주

에 대한 산재보험이 미적용되는데, 이 경우도 비록 법에는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농업 고용주들의 임의가입은 허가된다.

<표 2-5> 농업 피고용인에 대한 적용현황

	산재보험 적용(40개주)			산재보험 미적용 (임의가입허용)
	강제적용(38개주)		임의적용	
	다른 피용인과 동일	한계설정		
주	애리조나, 아이다호, 캘리포니아, 하와이, 콜로라도, 코네티컷, 콜롬비아 지역, 메사츄세츠, 몬타나, 뉴햄프셔, 뉴저지, 오하이오, 오레곤, 버진 아일랜드	알래스카, 플로리다, 조지아, 미주리, 아이다호, 일리노이, 아이오와, 메인,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건, 유타, 미네소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푸에르토리코,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델라웨어, 텍사스	앨라배마, 아칸소,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미시시피, 네브라스카, 네바다, 뉴멕시코, 테네시 노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14개 주	24개 주	2개 주	13개 주

4) 기타 EU 국가의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여부

가)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제도는 없다.

나) 덴마크

산재나 직업병과 관련해서는 어업과 관련한 일부 자영업자에게만 일반 산재보험제도가 적용된다.

다) 그리스

그리스에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농민에 대한 강제적인 기본제도를

만들었다. 1999년 이후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 개의 보험기금이 합쳐져서 자영업자 보험기구(Insurance Organization for the Self-employed (OAE))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출범했다. 특히 이 기구는 기술자 및 기타 전문가를 위한 보험기금(TEBE)과 상인보험기금(TAE), 운수업자를 위한 퇴직기금(TSA)이 중심이 되고 있다.

작업장에서의 산재에 대해서는 단지 하루만 일을 했어도 장애연금을 지급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 밖에서의 재해에 대해서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려면 보험기간의 절반이 요구된다.

라) 스페인

농민은 산재보험제도에 강제가입된다. 완전장애나 일시적인 소득중단 시, 유족급여시 최소한도의 보험가입기간에 대한 요구 없이 급여가 지급된다. 기술자와 상인에 대해서는 산재 및 직업병에 대한 특별한 보호제도가 없다.

마) 프랑스

농민은 사적인 생활에서의 사고·산재 및 직업병을 포괄하기 위해서 사고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 보험은 환자의 자부담 없이 의료비, 보조구 비용, 기능적 재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장한다. 장애의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기술자와 상인의 경우 산재나 직업병에 대한 강제제도는 없다. 그러나 피용인과 동일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 산재보험에 가입의사가 있는 경우는 임의가입해서 각출금을 낼 수 있다.

바) 아이슬란드

모든 취업자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산재와 직업병에 대한 국가보험이 있다. 자영업자는 임의로 탈퇴하지만 않는다면 이 제도에 포괄된다.

사) 이탈리아

자영업자도 일반 산재보험제도의 규제에 따라 산재와 직업병에 대한 급여를 제공받는다.

아) 리히텐슈타인

강제보험이 제공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보험의 규정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자) 룩셈부르크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일반 산재보험제도에 따라 보호되지만, 한편으로는 특별한 조치가 농민, 기술자, 상인에게 적용되고 있다. 특수한 규칙이 존재하는 농민을 제외하면 모두 일반 산재보험제도의 모든 원칙이 적용된다. 농민의 특수규칙: ① 산재 후 첫 13주 동안은 현금급여의 자격이 없음 ② 연금계산방식에서 심각한 부상에 과징금(surcharge) 적용.

차) 네덜란드

모든 네덜란드 국민에게 일반보호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단지 몇 가지 점에서만 있다. 산재와 직업병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히 산재보험제도라 이름붙여진 제도는 없다. 이러한 위험은 질병보험, 장애보험, 유족보험에서 포괄된다.

카) 노르웨이

자영업자는 모두 보편적인 보호 범주를 가진 일반 사회보험제도에 강제적용된다. 농민, 자영업자는 일반 산재보험제도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단, 어민은 강제가입해야 한다.

타) 오스트리아

일반 산재보험제도에서 농장 경영자와 가족종사자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농민은 농민사회보험기금에 강제가입해야 한다. 전반적 급여수준은 일반제도와 동등하다. 연금의 계산은 정액제로 한다.

기술자와 상인은 일반 산재보험제도의 틀 내에서 보장받는다. 급여는 통상 일반 산재보험제도의 급여수준과 같다.

파) 포르투갈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산재와 관련해서 임의가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 핀란드

자영업자는 산재와 직업병에 대해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의 보호 범주는 피고용인의 것과 같다. 자영농은 강제가입해야 한다.

제3장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현황 조사

1. 적용제외 근로자

가. 적용제외 근로자의 규모

현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급속한 적용확대 과정을 통하여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와 현장실습생, 해외파견자, 영세사업주 등을 그 적용범위로 포괄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5조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업종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적용 및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를 통하여 적용제외시키고 있다. 그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농림어업 및 수렵업,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및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공사, 가사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의 사업 등이 포함된다(표 3-1 참조).

이 중 재해에 대한 보호가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 및 보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제외된 소규모 건설공사 종사 근로자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이다. 이들은 근로자이면서도 산재사고시 산재보험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법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을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이다. 현재 사회안전망으로서 산재보

<표 3-1>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종류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운 사업	다른 법에서 보상받는 사업
사업 내용	건설공사중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 또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서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가사서비스업	

험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주에게도 산재보험 가입의 기회를 제공한 현 시점에서 이들에 대해서만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제한을 두는 것은 근로자간의 형평성의 면에서도 맞지 않는다. 더욱이 건설업 종사 근로자의 경우 건설업은 재해율이 가장 높은 산업의 하나임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나. 건설업 적용제외 근로자

현재까지는 자료의 한계로 이들 근로자의 정확한 수를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 근로자가 어느 정도나 될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전체 건설업 공사 중 2천만원 미만의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기로 하자. 이는 공사건수와 공사금액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산재보험과 관련지어 서 말하면, 공사건수는 산재보험이 성립되어야 하는 가입건수를 의미하고, 공사금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일정하고¹⁾ 1인당 인건비의 평균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공사금액으로는 실제 산재보험으로 보호되는 근로자의 수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사실상 건설업에서는 총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보아서, 총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해서 인건비를 구하고 있다.

2000년 한 해 동안 보고된 건설공사건수는 모두 41만 5천여건에 이르고 총 공사금액은 약 35조원에 달한다. 이 중 총 공사금액 1천만원 미만 규모의 공사는 건수는 43.5%이고, 금액으로는 1.9%이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규모의 공사는 건수로는 34.4%, 금액으로는 9.8%이다.²⁾ 이를 2천만원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면, 전체 공사건수 중 적어도 50% 이상의 공사가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며, 2천만원 미만의 공사가 전체 공사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많아도 4% 미만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2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로 할 경우 건설업 분야에서 산재보험 가입건수는 약 2배 증가하며, 산재보험으로 보호되는 건설업 종사 근로자는 적어도 4% 이상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다. 2000년 현재 건설업 총 취업자를 165만 4천명으로 볼 때, 산재보험의 적용확대를 통해서 약 6만 6천여명의 근로자가 새로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2> 건설업 공사규모별 계약실적

(단위: 건, 백만원, %)

공사규모	건 수	금 액
1,000만원 미만	180,712 (43.5)	669,554 (1.9)
1,000만원~5,000만원 미만	142,822 (34.4)	3,416,351 (9.8)
5,000만원~1억원 미만	36,466 (8.8)	2,546,827 (7.3)
1억~5억원 미만	42,483 (10.2)	9,271,412 (26.5)
5억~10억원 미만	7,026 (1.7)	4,987,026 (14.2)
10억~30억원 미만	4,377 (1.1)	7,091,746 (20.3)
30억~50억원 미만	718 (0.2)	2,739,335 (7.8)
50억원 이상	500 (0.1)	4,287,492 (12.2)
전 체	415,284 (100.0)	35,009,748 (100.0)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통계연보』, 2000.

2) 원래는 2천만원 미만 공사의 규모를 살펴보아야 하나,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혹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내의 건설공사가 산재보험에서 제외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작업 대부분이 단기간에 끝나는 공사로서 산재보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가장 크다. 사실, 건설업 공사를 보면 공사기간이 단기간인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전체 공사건수로 볼 경우 1개월 미만 기간의 공사가 약 40% 정도이며, 3개월 미만인 경우가 78%에 달해서 상당수의 공사가 3개월 이내에 마감되고 1년 이상의 공기를 가진 것은 전체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3 참조).

이렇게 건설업의 공기가 짧은 것은 건설업이 가진 산업의 특성상 나타나는 것이다. 건설공사의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공사 종류들이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큰 공사라 할지라도 한 공정이나 한 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적용이 손쉬운 것은 비교적 소수의 대형 일반건설업체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문건설직종에 특화된 다수의 소형 전문건설업체(하청업체)의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은 비단 2천만원 미만의 공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 길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공사 규모별 공사기간을 보면 나타나는데, 실제로 공사금액 1천만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 공사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96% 이상으로 나타나지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기간 3개월 미만인 공사는 82.5%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표 3-3 참조). 이 경우 총 공사금액 2천만원의 공사와 총 공사금액 4천만원의 공사가 공사기간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바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한다면, 비록 건설업의 공사기간이 짧아서 산재보험의 적용·징수가 어렵다는 현실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만을 산재보험 적용제의 공사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건설업의 공사규모에 따라서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건설업에서의 공사규모에 따른 제한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형평성의 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3> 공사규모별 공사기간(건수)

(단위: 건, %)

	총 계		1천만원 미만		1천만~5천만원		5천만원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전 체	415,284	100.0	180,712	100.0	142,822	100.0	91,750	100.0
1월 미만	165,685	39.9	121,890	67.4	37,397	26.2	6,398	7.0
1~3월	159,430	38.4	51,786	28.7	80,402	56.3	27,242	29.7
3~6월	40,654	9.8	3,927	2.2	15,283	10.7	21,444	23.4
6~12월	27,817	6.7	2,228	1.2	5,991	4.2	19,598	21.4
12~24월	19,334	4.7	856	0.5	3,599	2.5	14,879	16.2
24월 이상	2,364	0.6	25	0.0	150	0.1	2,189	2.4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통계연보』, 2000.

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농림수산업 근로자

적용제외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범주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농림수산업 종사 근로자이다. 이들이 적용제외되고 있는 이유 또한 현실적인 적용의 어려움이다. 이는 앞의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보호보다는 행정적 편의가 우선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재해의 위험이 가장 높은 업종 중의 하나인 벌목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벌목업이 유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까지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외의 농림수산업 사업장 종사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형평성의 면에서나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2.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다음에는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아닌 농민, 기술자, 상인 등 자영업자에 대해서 산재보험의 적용가능성과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농민 산재보험적용의 필요성과 가능성

1) 농민의 규모와 산재보험 필요성

우리나라의 농업 종사자의 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00년 현재 전체 인구 4천 7백만여명 중 농가인구는 4백 3만여명으로서 전체인구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 2천 1백만여명 중 농림업 취업자는 220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10.5%에 이르고 있다(표 3-4 참조).

<표 3-4> 농림업 종사자의 수

(단위: 천명, 호, %)

인 구	가구수		취업자	
	전체 가구수	14,318 (100.0)	총 취업자 수	21,061 (100.0)
전체인구	47,275 (100.0)	14,318 (100.0)	총 취업자 수	21,061 (100.0)
농가인구	4,032 (8.5)	1,384 (9.6)	농림업 취업자 수	2,203 (10.5)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0.

농업종사자들은 농업기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빈번한 기계사용과 농약, 비료의 사용증가(표 3-5, 그림 3-1, 그림 3-2 참조), 자연이나 동식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작업중 재해나 질병의 위험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농촌의 인구노령화로 인해서 이러한 위험요인의 노출이 곧 작업중 재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작업 중의 사고로 인한 장애나 소득의 중단, 사망등은 농가의 생활불안정과 빈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식량자원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에 비록 기술자나 상인등과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민에 대해서는 특별히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국가가 다수 있다. OECD 국가를 보면 농민을 산재보험에 강제적용시키는 국가가 18개 국으로서 전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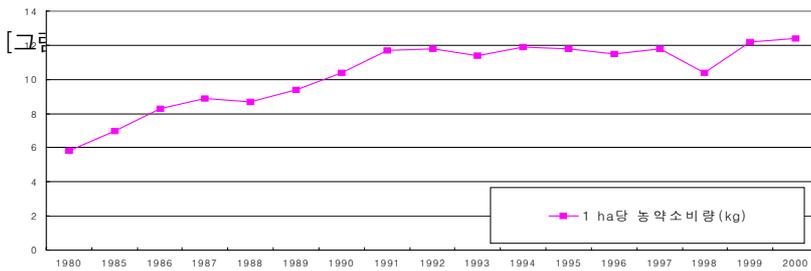
<표 3-5> 농업용기계 전국 보유현황: 1980~2000

(단위: 대)

연도	경운정지 용기구 (관리기)	동력 경운기	농용 트랙터	동력 이앙기	동력 파종기	곡물 건조기	농용 양수기
1980	252,443	289,779	2,664	11,061	3,479	1,616	193,943
1985	601,351	588,962	12,389	42,138	3,584	5,437	286,298
1990	792,439	751,236	41,203	138,405	6,492	17,749	341,548
1995	969,282	868,870	100,412	248,009	12,995	28,408	384,900
2000	1,130,850	939,219	191,631	341,978	7,711	55,573	292,871

시점	병충해 방제용 기구	동력살 분무기	동력 분무기	동력주행 식분무기	바인더	동력 탈곡기	콤바인
1980	331,912	222,031	108,632	1,249	13,652	219,896	1,211
1985	517,530	222,402	291,945	3,183	25,538	301,717	11,667
1990	695,364	195,822	484,212	15,330	55,575	266,608	43,594
1995	712,882	125,326	557,349	30,207	66,960	121,970	72,268
2000	628,946	166,889	410,725	51,332	72,315	58,766	86,982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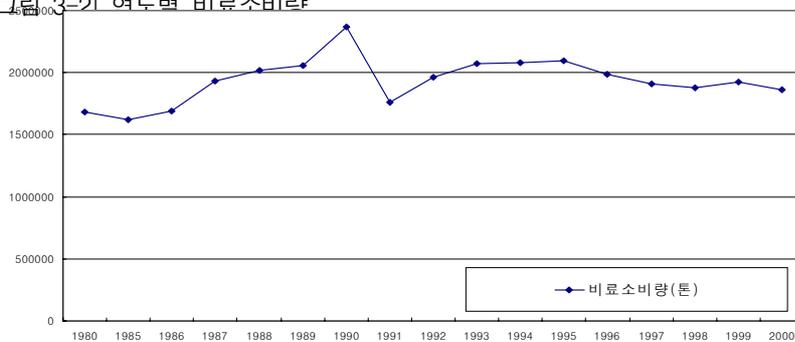
출처: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0.

40%에 이르고, 4개국은 임의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민이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국가는 8개국(27%)에 불과하다(<표 3-6> 참조).

<표 3-6> OECD 국가의 농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현황

적용방식	강제적용	임의적용	적용제외
국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멕시코,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아이스랜드, 핀란드, 폴란드, 터키, 네덜란드, 뉴질랜드, 체코,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스위스, 포르투갈, 일본	호주,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한국, 캐나다, 미국
30개국	18개국(60%)	4개국(13%)	8개국(27%)

[그림 3-2] 여도변 비료소비량



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0.

2) 농민의 재해실태

농민이 작업중 입을 수 있는 사고는 크게 불 때 농기계에 의한 재해, 농약으로 인한 사고, 기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민의 작업중 재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농민

2,000명을 지역별로 비율적 층화표집하여 조사하였다.³⁾ 조사 결과 1년 동안 농기계, 농약, 기타 작업사고를 당한 경우가 전체의 8.4%로 나타나서 일반 산업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사고율을 나타내었다(표 3-7, 표 3-8 참조).

일반산업의 재해율을 보면 전산업 평균 0.74%이고, 재해율이 가장 높은 광업의 경우에도 4.51%이다. 일반산업의 재해율이 요양기간이 4일 이상 되는 재해만을 보고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민들이 보고한 재해를 4일 이상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한 재해만을 다시 계산해 볼 경우에도 재해율은 3.8%로 전체 산업 중 광업 다음으로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을 보면 농기계로 인한 사고를 당한 경우가 전체의 2.8%, 농약 사고를 당한 경우가 3.3%, 기타 농작업시 사고를 당한 경우가 2.7%로 나타나, 농기계나 농약관련 재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낫 등의 농기구에 다치거나 뱀에 물리거나 하는 등의 일반 사고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농업종사자 산업재해에 대한 실태조사

	빈도(명, %)	4일 이상의 치료 기간을 가진 빈도	
		통원+입원	입원
사고 경험 없음	1,833(91.7)	-	-
사고경험 있음	167(8.4)	75(3.8)	24(1.2)
농기계 사고	55(2.8)	49	19
농약 사고	65(3.3)	11	2
기타 사고	54(2.7)	15	3
전체	2,000(100)		

자료: KLI 조사, 2000.

3)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부록>에 있음.

<표 3-8>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표

	전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업	운송, 창고, 통신업	기타산업
산재율	0.73	4.51	1.21	0.61	0.27	0.88	0.41

주 : 백인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

자료 : 노동부(2000), 『2000년 산업재해분석』.

농민들이 당한 사고의 정도를 보기 위하여 총 치료일수, 치료비용, 사고후 장애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9>와 같다. 이를 보면 총 치료일수가 가장 많은 것은 농기계 사고로 작업손실기간이 평균 38.5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입원치료일수의 평균도 9.8일에 이르고 있었다. 또한 농기계 사고의 경우 치료비용 또한 64만여원에 이르고, 사고후 장애가 남거나 일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61.8%에 달해서, 한 번 사고가 나면 경제적으로나 이후의 작업복귀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농약 사고나 기타 농작업 사고의 경우에도 작업손실기간이 13일 이상 되었으며, 농민이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표 3-9> 사고의 심각한 정도

		농기계(N=55)	농약(N=65)	기타(N=54)
치료 일수 (일)	총치료일수	38.5	13.1	18.3
	집	14.3	4.4	9.5
	통원	14.3	8.3	5.0
	입원	9.8	0.3	3.9
치료비용(원)		644,423	60,185	65,962
사고후 지장 정도 (%)	장애남음	27.3	10.5	5.6
	상당한 지장	34.5	13.8	13.0
	다소 지장	20.0	32.3	16.7
	없음	18.2	52.3	64.8

자료 : KLI 조사, 2000.

보고된 농약 사고는 평균 8.3일의 통원치료기간이 필요하고 사고후 장애가 남거나 일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고한 경우가 24.3%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사고 발생시 치료비에 대한 해결방법을 본 결과 집에 있던 돈이나 저축으로 해결한다는 경우가 63.3%로 가장 많았고, 농협의 공제나 보험, 민간보험을 통해서 해결한 경우도 각각 8.0%, 6.9%에 이르렀지만, 치료비가 없었다는 경우가 16.0%, 가족이나 친척, 이웃의 도움으로 해결하거나 빚을 얻은 경우도 3.7%로 나타나, 약 20%의 사람들은 치료비 때문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표 3-10 참조).

<표 3-10> 사고발생시 치료비 해결방법

치료비 해결방법(N=167)	비율(%)
- 집에 있던 돈이나 저축으로 해결	63.3
- 치료비 없음	16.0
- 농협의 공제나 보험을 통해 해결	8.0
-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혜택	6.9
- 가족이나 친척, 이웃의 도움	3.2
-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이 배상	2.1
- 빚을 얻어 해결	0.5

농민들이 평소 사고발생시 필요한 금전적인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농협의 농작업사고 공제에 가입하는 것과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사고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축을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 공제, 보험, 저축 상황을 알아본 결과는 <3-11>과 같다. 이를 보면 본인이나 가족이 농협의 농작업 사고에 가입한 경우가 47.5%이고,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31.9%이며, 보험적 성격을 가진 대비책이 아닌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가 53.7%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적어도 이렇게 농민이 스스로 대비책을 찾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사실은 농민의 작업중 재해

<표 3-11> 재해대비방법

(단위: %)

	비율(N=1987)
- 본인 또는 가족이 농협의 농작업 사고 공제에만 가입	26.7
- 본인 또는 가족이 민간(상해, 생명)보험에만 가입	10.1
- 본인 또는 가족이 농협공제와 민간보험 둘다 가입	20.2
- 본인 또는 가족의 저축만 있음	19.1
- 위의 어떠한 대책에도 해당 없음	23.4

자료: KLI 조사

와 관련한 보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농민이 재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인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들이 금전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을 농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도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패널조사에서 농민에게 작업중의 재해와 관련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급여가 무엇인지를 필요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게 한 결과 요양급여를 1순위로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2순위는 휴업급여, 장애급여, 3순위로는 유족급여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재보험이 도입되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급여내용인 것이다.

<표 3-12> 재해시 필요한 서비스 (최우선 순위의 답변)

	1순위(명수, %)	2순위(명수, %)	3순위(명수, %)
병원치료비 전액	190 (76.9)	22 (8.9)	12 (4.9)
간병인 비용 지급	15 (6.1)	39 (15.8)	14 (5.7)
휴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11 (4.5)	79 (32.0)	48 (19.4)
장애발생시 급여지급	15 (6.1)	71 (28.7)	71 (28.7)
사망시 유족급여	11 (4.5)	28 (11.3)	78 (31.6)
사망시 장의비 지급	4 (1.6)	6 (2.4)	11 (4.5)
기 타	1 (0.4)	-	-
전 체	247 (100)	245 (99.2)	234 (94.7)

자료: KLI 노동패널 4차년도 조사.

3) 산재보험 관련 인식

농민들이 산재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그 가입의사가 어떠한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에 대한 인지 정도를 알아본 결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12.5%에 불과하고, 산재보험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는 사람이 전체의 50.7%로서 전체의 절반 이상이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에게 산재보험의 내용을 설명한 후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의사를 물어본 결과 전체의 27.1%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의사는 산재보험 인지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산재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42.4%가 산재보험 가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산재보험이 무엇인지 처음 듣는다고 답한 사람의 경우는 산재보험 가입의사가 1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산재보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답한 경우보다 가입의사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민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시킬 경우, 농민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재해시 산재보험의 급여 내용이 의료보험이나 농협의 공제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3> 산재보험의 인지 여부와 가입의사

(단위: 명, %)

인지↓, 가입의사 →	가입의향 있음	가입의향 없음	잘 모름	전 체
잘 알고 있음	106 (42.4)	143 (57.2)	1 (.4)	250 (100)
들어본 적 있음	251 (34.1)	484 (65.7)	2 (.3)	737 (100)
처음 들음	185 (18.3)	824 (81.3)	4 (.4)	1,013 (100)
전 체	542 (27.1)	1451 (72.6)	7 (.4)	2,000 (100)

자료: KLI 조사

또한 만일 산재보험을 실시할 경우,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낼 경우 가입의사가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는 <표 3-14>와 같다. 이를 보면 월 보험료가 5,000원 미만일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대답을 한 경우는 32.0%로서, 막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보다 그 수가 더 많았다. 그러나 월 보험료가 1만원 이상 1만 5천원 미만일 경우 가입의사를 물어본 결과 가입의사는 5.7%로 급격히 줄었다. 이 결과는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가입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월 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할 경우 실제 가입률은 크게 떨어져서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4> 산재보험 보험료에 따른 가입의사

(단위: %, N=2000)

월 보험료	가입함	가입하지 않음	잘 모름
5,000원 미만	32.0	67.7	0.4
5,000~10,000원 사이	16.4	83.3	0.4
10,000~15,000원 사이	5.7	94.0	0.4
15,000~20,000원 사이	3.3	96.4	0.4
20,000원 이상	1.6	98.1	0.4

자료: KLI 조사

나.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가능성

1) 자영업자의 규모와 산재보험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2,100만여명 중 비임금근로자는 792만명으로 나타나서 전체 취업자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 각 산업별 총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을 보면 농림어업이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91.9%에 이르고 있고, 그 다음은 도소매업 55.5%, 음식·숙박업 49.0%, 운수·통신업 30.9% 등으로 나타난다(표 3-15 참조). 농민을 제외하고 보면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통신 등 서비스업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5> 각 산업별 총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율

(단위: 천명, %)

산 업	총취업자수	비임금 근로자수	비임금근로자 비율
전 체	21,061	7,919	37.6
농림어업	2,288	2,103	91.9
광공업	4,262	740	17.4
제조업	4,244	739	17.4
SOC 및 기타	14,511	5,075	35.0
전기·가스 수도사업	63	0	0.0
건설업	1,581	357	22.6
도매 및 소매업	3,805	2,111	55.5
음식·숙박업	1,924	943	49.0
운수·통신업	1,265	391	30.9
금융·보험업	729	53	7.3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업	1,356	293	21.6
공공·개인·사회 서비스업 및 기타	3,788	926	24.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산재보험의 적용과 관련해서 보면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임금근로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의 37.6%인 비임금근로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재보험이 작업,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생긴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및 건강의 상실 등에 대해서 작업종사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겨났다는 것을 생각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적용범위는 작업중 위험의 가능성을 가진 전체 경제활동 종사자 중 일부만을 포괄하는 불완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외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표 3-16 참조), 비임금근로자를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의 한계가 더 여실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자영업주와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의 비율은 대만의 30%를 제외한다면 모두 2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6>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 국제비교: 1999

(단위: %)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호주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전산업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피용자	61.7	82.4	70.0	86.4	84.8	88.9	89.3	89.2	85.9	91.8
자영업주	28.8	11.8	22.0	12.6	14.3	11.1	9.6	10.4	12.5	8.1
가족종사자	9.5	5.8	8.0	1.0	0.9	0.0	1.1	0.4	1.3	0.1

자료: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9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일본 노동대신관방정책조사부, 『노동통계연감』, 1999.

대만, 『노동통계연감』, 각년도 ; 『인력자원조사통계연보』, 각년도.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1999.

외국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를 보면 비임금근로자의 작업중 재해를 보호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이 전체 비임금근로자를 포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비임금근로자를 농민, 기술자, 상인으로 구분할 때 최소한 농민, 더 나아가 재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자는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U 국가들을 보면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자영업자 전체 혹은 일부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표 3-17 참조). 이를 보면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3개국 중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제도에 포함되어서 운영되는 경우는 5개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8개국은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분립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분립형 제도를 택한 국가를 보면 농민과 기술자, 상인에 대한 산재보험제도를 분립해서 운영하는 국가가 7개국이었는데, 이들 7개국 중 모든 자영

업자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강제적용하는 경우는 그리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의 3개국이었으며, 독일, 프랑스, 핀란드는 농민에게는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되지만 기술자나 상인에게는 임의적용되고 있었으며, 스페인의 경우는 농민만이 산재보험에 강제적용되고 다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표 3-17>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체계

		강제적용	임의적용
일반 산재보험제도에 통합		이탈리아,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자영업 산재보험분립	농민과 기술자, 상인 통합제도		포르투갈
	농민과 기술자, 상인 분립제도	농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기술자, 상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자료: EU 웹사이트

일본의 경우를 보면 특별가입제도를 만들어서 농민과 재해의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 가입기회를 제공하는 분립형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일본 제도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서구 국가들의 경우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경우 전체 자영업자를 모두 적용범위로 하고 농민을 강제보험으로 할지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인데, 일본의 경우는 전체 자영업자를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로 한 것이 아니라 재해위험이 높아서 산재보험의 필요성이 높은 일부 직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방식은 전체 취업자 모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취업자에게는 산재보험 임의가입의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산재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책

임을 지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서비스

자영업자들은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님으로써 작업중 재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비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산재보험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민간보험인 상해보험 가입률을 조사한 결과, 약 42% 이상의 자영업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개 이상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전체 상해보험 가입자의 42.4%에 달하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에게도 무언가 재해에 대한 방비책이 필요하고 이들은 그 방비책을 국가가 아닌 민간시장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3-18 참조).

<표 3-18> 민간 상해보험 가입 여부 및 개수

(단위: 명, %)

상해보험 가입 여부	빈 도
상해보험 가입	354명 (42.3) ¹⁾
1개 가입	201 (24.0)
2개 가입	99 (11.8)
3개 이상 가입	51 (6.1)
상해보험 비가입	482명 (57.7)

주: 1) 가입자 중 응답자 3명 가입개수를 응답하지 않음.

산재보험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특히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서비스를 알기 위하여 작업중 재해를 당할 경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급여가 무엇인지를 필요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게 한 결과, 1순위에서는 요양급여가 가장 높았고, 2순위에서는 휴업급여, 장애급여, 3순위에서는 유족급여로 나타나, 필요로 하는 급여의 순서는 농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표 3-19 참조).

자영업자가 재해시 필요하다고 선택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은 산재보험의 급여로서 상해보험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단순한 현금과는 달리 재해자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로 할 때 욕구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맞춤형 급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해보험의 경우 지속적인 장애연금의 지급이나 재활프로그램의 수혜, 재요양시 급여제공 등의 급여가 부재하기 때문에 재해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표 3-19> 재해 발생시 필요서비스 (최우선 순위의 답변)

(단위: 명, %)

	1순위	2순위	3순위
병원치료비 전액	602 (72.0)	110 (8.9)	12 (4.9)
간병인 비용 지급	28 (3.3)	108 (15.8)	14 (5.7)
휴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96 (11.5)	79 (32.0)	48 (19.4)
장애발생시 급여지급	59 (7.1)	71 (28.7)	71 (28.7)
사망시 유족급여	38 (4.5)	28 (11.3)	78 (31.6)
사망시 장의비 지급	8 (1.0)	6 (2.4)	11 (4.5)
기 타	5 (0.6)		
전 체	836 (100)	245 (99.2)	234 (94.7)

자료: KLI 노동패널 4차년도 조사

자영업자들 자신은 산재보험의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자영업 종사자에게 산재보험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는 <표 3-20>과 같다. 이를 보면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가 49.4%, 산재보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50.6%로 나타나서 조사대상자의 약 1/2 정도가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었다.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현실은 이들이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중요한 추진력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판

단된다.

<표 3-20> 산재보험 필요성 및 가입의사

(N=836, 단위:명, %)

	산재보험 필요성	산재보험 가입의사
그렇다	413 (49.4)	313 (37.4)
아니다	423 (50.6)	523 (62.6)

자료: KLI 노동패널 4차년도 조사

3. 특수고용 종사자

가. 특수고용 종사자의 개념 및 산재보험 필요성

1) 특수고용 종사자의 개념 및 특성

특수고용 종사자는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나타난 근로제공 형태로서 독립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못하고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고객을 찾아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업무수행 정도에 따라 수당 등 대가를 받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경기보조원 등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간 이들은 고용과 사용, 지휘종속관계, 근무지나 근태 여부, 납부하는 조세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분류의 근로자 개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된 자영업자로 취급되어서 제반 노동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일반 자영업자와는 다른 면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들은 자영업자와는 달리 계약한 사업주와 일정 정도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즉, 사용자 또는 계약당사자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는 실질적인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고, 어느 정도의 인적, 조직적 종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종속성 면에서 보면 근로자나 근로자에 준하는

형태의 신분에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특수고용종사자라는 개념은 계약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인적·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근로자의 전형적인 특성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않지만 또한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고용형태에 놓인 집단을 일컫는 개념이다.

2) 특수고용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

가) 산재보험 적용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고용 종사자는 기존 개념의 근로자의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자영업자로 분류하기에는 근로자로서의 속성 또한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그간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서 노동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그 결과 잘못된 노동관행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기본적인 재해에 대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법적 보호가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요구되었던 공장, 사무실, 광산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들을 표준으로 하여 정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고용형태를 가진 집단에 대한 적절한 보호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생산, 사무영역 이외에 판매를 비롯하여 기타 서비스영역에 새로운 형태의 계약을 맺고 노무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게 되었고, 이들 또한 전통적 의미에서의 근로자들 못지않게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와 학계에서는 준근로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특수고용형태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동법적 보호의 제사항 중 산재보험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골프경기 보조원 등 일부 직종 종사자는 작업중 재해의 위험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수를 제외하고는 저소득이어서 재해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 및

소득의 중단시 생활의 곤란이 극심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산재보험의 보호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앞으로 자영업까지도 확장될 것을 예상할 때,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특수고용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시켜 재해발생시 생활상의 곤란을 감소시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위치라는 특수고용 종사자의 특성은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방식에서 많은 논란을 낳을 소지를 갖고 있다. 즉, 이들과 계약을 맺은 사업자들은 이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경우 자영업자의 틀에서 적용시킬 것을 주장하고, 특수고용 종사자 자신들은 근로자의 틀 내에서 적용되기를 주장하는데, 이 두 주장 모두 어느 정도 합당한 이유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은 구체적인 현재의 근로실태나 상황을 검토하고, 가장 적용가능하고 타당한 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 독일의 준근로자 개념 도입과 사회보험 적용

독일의 경우 1998년 12월 법 개정을 통하여 준근로자(Scheinselbständige) 개념을 도입하고, 일부 직종 종사자를 자영업자로 분류하던 것에서 준근로자로 분류하고, 1999년 1월부터 이들에 대해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강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호응이 저조하자 다시 1999년 12월 준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가려내기 위한 5가지 조건을 마련하여, 다음의 5가지 조건 중 3개 이상이 해당되면 준근로자로 간주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 ①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월 630마르크 이상의 임금을 주는 근로자를 두지 않는 경우
- ②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사람의 사업주를 위하여 일하는 경우
- ③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근로자가 하는 일을 하는 경우
- ④ 전형적으로 사업주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경우
- ⑤ 외형적으로 한 사업주에게 고용관계에 의해 수행한다고 간주되는 일을 하는 경우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의 독일 준근로자들이 의료보험에는 가입하지만 연금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⁴⁾ 이들이 노후대비 없이 노령 빈민이 될 경우 국가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연금보험 가입을 강제화함으로써 스스로 노후보장을 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⁵⁾

그러나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 위치에 있고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군에 대해서 근로자와 동일한 틀내의 사회보험 가입을 강제할 것은 한국의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시사하는 바 크다 할 것이다.

나. 특수고용 종사자의 현황

특수고용 종사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가장 다양하며 이질적인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직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4) 독일 사회보장청에서는 그 이유를 본인의 인식부족, 사업주 부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가입 기피로 파악하고 있다.

5)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는 첫째로, 1949년 이전 출생자로서 법개정 이전 이미 생명보험, 연금보험 계약, 이와 유사한 노후보장책이 있는 경우, 법개정 현재 58세 이상인 자는 연금보험 가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둘째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조치를 통해서 다시 돌려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주된 목적이 기업에게 일정 정도의 부담을 지게 해서 개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애내 소득재분배를 강제하고 국가가 이를 보조하는 정책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것은 약 30만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 10만명 정도가 종사하는 학습지교사, 5만여명의 골프경기보조원이다. 우선 산재보험 적용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들의 재해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의 경우 주로 일어나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은 주로 교통 사고와 많은 보행 및 과로로 인한 유산 등으로 보고되고 있고, 골프경기보조원의 경우에는 골프장 내에서의 타구 사고와 무거운 골프백을 나르고 이동하는 일을 하는 데에서 오는 관절계통의 질환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과 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이들의 업무관련 재해 및 질병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보험회사, 학습지회사, 골프장의 인사·노무관리 담당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⁶⁾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게 업무관련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파악하여 서류로써 정리해 놓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보험사 83%, 골프장 46%, 학습지회사 40%가 서류로 정리해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1 참조). 이렇게 서류로 정리해 놓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이들 회사에서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각 직종별로 서류정리의 정도가 다른 것은 회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해를 파악하는 정도가 각 직종별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즉, 보험설계사의 경우 주된 업무수행이 회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반경도 넓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들의 업무와 관련한 재해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에 비해서 학습지교사는 주업무수행은 회사 외부에서 이루어지지만 대상과 활동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고, 골프경기보조원의 경우는 업무수행이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해를 파악하

<표 3-21> 업무관련 질병·부상·사고 서류정리 여부

6)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에 수록됨.

(단위: 개소,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경기보조원
모두 정리	1 (4.2)	4 (40.0)	15 (20.5)
일부만 정리	2 (8.3)	1 (10.0)	18 (24.7)
서류로 보관 안함	20 (83.3)	4 (40.0)	34 (46.6)
기 타	-	-	5 (6.8)
잘 모름	1 (4.2)	1 (10.0)	1 (1.4)
전 체	24 (100)	10 (100)	73 (100)

자료: KLI 조사.

기가 용이할 것이고 이러한 차이가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고에 관한 서류정리를 하는 정도를 달리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의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여 회사가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회사가 100% 부담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답을 한 경우가 보험사 3개소(12.5%), 학습지회사 4개소(40%), 골프장 11개소(15.1%)로 나타났다(표 3-22 참조).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를 보면 보험사와 학습지회사의 경우 모두 직원 규모가 업계 5위 내에 드는 큰 회사들로서 비록 업체 수는 적을지라도 계약된 특수고용 종사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의 혜택을 받는 특수고용 종사자의 수는 조사대상 기업내 보험설계사 약 55%, 학습지교사 약 8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프장의 경우는 상해보험을 통해서 업무상 부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65.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상해보험 가입방법으로는 개인에게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거나, 회사가 100%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개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거나, 회사와 개인이 각 50%씩 비용부담을 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우별로 해당 경기종사원의 비율을 보면 회사가 100% 재정부담을 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12.6%, 회사가 비용의 50%를 부담한 상해보험에 가입된 경우 2.7%, 개인 부담으로 상해보험이 강제된 경우 2.1%로

상해보험을 통해서 작업중 재해에 대한 보장이 확실히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골프경기보조원의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개인별 상해보험을 권장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기보조원 비율은 41.2%,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기보조원의 비율은 29.8%이어서 이들의 작업중 재해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개개인이 대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아무런 보장책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관계 종사자가 현재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산재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을 세운 회사가 상당수 있으며, 그 대책에는 회사가 100% 비용을 부담하는 상해보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들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작업중 재해에 대한 <표 3-22> 사고·질병·부상 대비 회사의 조치

(단위: 개소, %)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경기보조원	
	회사수	해당모집인 비율	회사 수	해당교사 비율	회사 수	해당 보조원 비율
회사 100% 부담 상해보험 가입	3(12.5)	54.7	6(60)	82.9	11(15.1)	12.6
회사 50% 부담 상해보험 가입	-		-		3(4.1)	2.7
개인별 상해보험 가입 강제함	-		-		3(4.1)	2.1
개인별 상해보험 가입 권장함	-		-		31(42.5)	41.2
특별한 대책 없음	15(62.5)	33.1	1(10)	0.2	17(23.3)	29.8
기 타	6(25.0)	12.2	3(30)	16.9	8(9.6)	11.4
전 체	24(100)	100	10(100)	100	73(100)	100

자료: KLI 조사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작업중 재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회사 또한 상당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권고사항만으로 대책이 세워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회사의 해결방법을 살펴본 결과는 <표 3-23>과 같다. 이를 보면 사고발생시 상해보험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조사대상 기업의 보험모집인 중 55.6%, 학습지교사 중 72.9%, 골프경기보조원 중 26.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사자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 27.9%, 학습지교사 27.1%, 골프경기보조원 33.2%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실제 사고·질병·부상에 대한 회사의 해결방법 (중복응답)

(단위: 개소,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경기보조원	
	회사수 (N=24)	해당 모집인 비율	회사수 (N=10)	해당교 사 비율	회사수 (N=73)	해당 보조원 비율
상해보험 통해 해결	4(16.7)	55.6	5 (50)	72.9	23(31.5)	26.8
정도에 따라 회사보상	4(16.7)	14.6	2 (20)	13.5	20(27.4)	25.3
가해자가 보상	-	-	-	-	49(67.1)	76.4
당사자 개인 부담	12(50.0)	27.9	3 (30)	27.1	21(28.8)	33.2
기 타	3(12.5)	4.3	1 (10)	13.4	8(11.0)	10.1
대처방안 없음	2(8.3)	1.1	1 (10)	0.0	-	-

자료: KLI 조사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은 비록 어느 업종이나 현재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업종에 따라 상당히 차이를 나타내고 있

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에 대한 대비책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으며, 이는 기타 복지 혜택에서도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보험설계사의 경우는 자녀학자금, 탁아비용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학습지교사의 경우는 상해보험과 건강진단을 제공하는 회사가 많았으며, 골프경기 보조원의 경우는 피복비, 식사비를 제공하는 회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보험사, 학습지회사, 골프장 등에 대해서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는 <표 3-25>와 같다. 이를 보면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혹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보

<표 3-24> 제공되는 복지혜택(중복응답)

(단위: 개소,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경기보조원	
	회사수 (N=24)	해당모집 인 비율	회사수 (N=10)	해당교사 비율	회사수 (N=73)	해당 보조원 비율
교통비	1(4.2)	2.7	-		1(1.4)	1.0
상여금	10(41.7)	19.6	1(10)	0.02	-	
피복비	-		-		45(61.6)	56.5
식사비	-		1(10)	0.02	28(38.4)	30.1
퇴직금	1(4.2)	0.7	1(10)	0.02	-	
자녀학자금	18(75.0)	72.4	-		-	
정기건강진단	5(20.8)	15.1	5(50)	72.87	4(5.5)	8.2
해외연수	3(12.5)	5.6	3(30)	10.62	3(4.1)	4.8
휴가비용	-		3(30)	14.94	1(1.4)	1.1
생리휴가	2(8.3)	2.0	-		7(9.6)	6.9
출산/육아휴가	4(16.7)	6.1	-		4(5.5)	3.5
택아비용	12(50.0)	52.3	-		-	
상해(손해)보험	3(12.5)	40.8	6(60)	82.92	12(16.4)	13.7
연금보조	5(20.8)	43.4	-		-	17.0
없다	3(12.5)	4.3	1(10)		12(16.4)	

자료: KLI 조사

협사의 경우는 72%, 학습지 회사는 70%, 골프장은 49%로 나타나, 특수 고용관계 종사자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회사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런데, 이 대답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조사대상 업종 중 작업중 재해에 대한 대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 골프장의 경우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하거나 대체로 바람직하다고 답한 경우 또한 46% <표 3-25>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견해

(단위: 개소, %)

	보험회사		학습지회사		골프장사업주	
	회사 수	해당모집원 비율	회사 수	해당 교사 비율	회사 수	해당보조원 비율
매우 바람직	1(4.2)	1.9	1(10)	0.02	14(19.2)	17.3
대체로 바람직	3(12.5)	1.8	1(10)	0.06	20(27.4)	25.8
별로 바람직하지 않음	10(41.0)	21.6	3(30)	24.91	24(32.9)	31.2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9(37.5)	72.0	4(40)	44.97	12(16.4)	18.1
잘모름	1(4.2)	2.7	1(10)	30.04	3(4.1)	7.4
전 체	24(100)	100.0	10(100)	100.0	73(100)	100.0

자료: KLI 조사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업종이 재해율이 높기 때문에 비록 현재는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산재보험의 적용 필요성 자체는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적용확대 방안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보험은 2000년 7월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확대됨으로써 산재보험이 전체 근로자에게 확대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고, 아직도 일부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농민 및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산재 위험에 대해서도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근로자들은 대부분 적용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서 그간 미루어졌던 것이고, 농민 및 자영업자의 경우는 그간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이었고,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은 근로자적인 성격을 갖는 면이 있지만 그간 자영업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적용제외되었던 것이다.

이들을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로 포괄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적용확대의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현재까지 적용제외되었던 모든 집단에 대해서 동시에 산재보험을 적용시키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적용이 보다 실효성있고 혼란없이 이루어져서 작업중 재해에 대한 보장체계로서의 산재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적용순서 및 적용방식의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1. 적용확대의 순서 선정

적용확대에서 우선 생각할 점은 현재까지 적용제외된 대상을 모두 동시에 산재보험 적용범위로 포괄할 것인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포괄할 것인가이다. 이는 행정적인 능력과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일이다. 그런데 적용확대에 있어서 서구 어떤 국가도 모든 집단을 일시에 적용범위로 포괄한 경우는 없고, 그 어느 국가보다도 단시간에 전국민을 포괄하게 된 한국의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의 적용확대 과정도 모든 집단을 일시에 포괄하지는 않았다. 이는 산재보험에서도 보다 단시간 내에 모든 집단을 적용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적용확대 자체는 집단별로 순차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준을 갖고 각 집단별 적용순서를 정하는가이다. 적용확대의 기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확대는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업종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적용확대의 순서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작업중 부상이나 질병이 심각한 집단이 산재보험이 가장 필요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에 우선적으로 산재보험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산재보험 적용확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적용확대가 시행될 경우 실질적인 보호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집단에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산재보험의 적용확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적용·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호의 실효가 없기 때문에 보호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집단에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타근로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근로자이면서 적용제외되는 경우는 타근로자와의 형평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인데 이들 집단에 대한 산재보험이 먼저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확대를 먼저 실시한 외국의 적용범주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어떤 한 국가의 적용범위의 선정이나 확대순서는 그 나라의 고유한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성 또한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미 다른 국가의 적용범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적용범위 확대의 순서를 결정하는 데 유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적용확대 순서 선정의 기준을 갖고 각 집단을 살펴본 결과는 <표 4-1>과 같다. 우선 질병이나 부상이 심각해서 적용확대가 절실한 집단은 현재 적용제외된 근로자와 농민, 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들이다. 현재 적용제외된 근로자는 소규모로 건설업 및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건설업과 농림어업이 재해율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소규모 작업장에서 종사한다고 해서 재해율 자체가 낮아질 리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농민과 기계 및 유해화학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은 그 재해 실태가 일반 근로자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또한 업종에 따라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재해율에 따른 산재보험의 필요성은 적용제외된 근로자, 농민, 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일반 자영업자의 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보호의 실효성은 실제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실시하였을 때 적용·징수의 가능성을 보는 것으로서 계약자가 확실한 특수고용관계 종사자가 가장 높고, 농민 및 위험 자영업자, 현 적용제외 근로자, 일반 자영업자의 순으로 될 것으로 여겨진다. 현 적용제외 근로자는 비록 고용주가 확실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적용제외된 이유가 적용·징수의 어려움이었음을 비추어 볼 때 실효성이 그다지 높게 나타날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셋째, 국내 타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볼 때는 근로자이면서도 적용제외 대상이 되어 있는 현 적용제외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근로자성을 일부 갖고 있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순서이고, 그 다음이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농민, 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

및 일반 자영업자일 것이다.

<표 4-1> 적용확대 순서 선정의 기준

	현 적용제외 근로자	농민· 위험 자영업자	특수 고용관계 종사자	일반 자영업자
보호의 필요성: 부상·질병의 심각성	4	3	2	1
보호의 실효성	2	3	4	1
국내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4	2	3	2
외국과의 비교	4	3	2	1
전 체	14	11	11	5

마지막으로 외국의 산재보험 적용범위와 비교해 볼 때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강제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를 임의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산재보험 적용범위와 비교해 보면 현 적용제외 근로자, 농민 및 위험작업종사 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일반 자영업자의 순으로 적용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이를 보면 적용확대의 순서는 현 적용제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확대하고, 그 다음에 농민 및 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마지막으로 일반 자영업자의 순서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때 농민 및 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중 어느 집단을 먼저 실시할 것인가는 현실적 입법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현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현재 적용제외 되고 있는 2천만원 미만 및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건설공사 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농림수산업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산재보험체계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이들이 그간 적용제외된 이유가 실질적인 적용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 제도와 다른 구조로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 때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가. 미적용 재해에 대한 급여지급

산재보험은 일단 적용대상이 되면 비록 미적용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모두 산재보험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규모 건설공사는 공사건수는 매우 많지만 공사금액이 적어서 단기간 공사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적용을 시켜야 되는 사업장 수는 매우 늘어나지만 적용시킬 수 있는 기간이 극히 단기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이 강제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적자가 우려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간 미적용 재해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합하지 않다. 우선, 산재보험의 기본 목적이 재해근로자에게 의료적 처치, 소득의 중단에 따른 금전적 필요, 재활 등 필요로 하는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둘째, 산재보험의 가입 책임은 사업주와 산재보험 관리운영 주체에 있는 것이지 근로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산재보험 미적용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급여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근로자 자신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피해를 당해야 하고, 피해의 내용이 산재

근로자의 생활과 재화에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치명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이 민간보험과 차별성이 없어질 것이다.

셋째,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모든 근로자들은 미가입 재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혹은 연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공사의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농림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서만 미적용 재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비록 이들이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 포괄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차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적용에 따른 사회적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종합하면, 미적용 재해에 대한 급여는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단, 미적용 사업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관리 운영주체는 산재보험의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고, 적용을 보다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농림업 종사 근로자의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업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생각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농번기에 일일 고용되어 작업하는 품앗이 근로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만일 품앗이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면, 농민들은 품앗이를 쓸 때마다 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농가에서 품앗이의 사용 여부와 그 기간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이를 보면 전체 농가의 44%가 농번기 등 일손이 부족할 때 품앗이 등 일일 고용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앗이를 사용한 농가의 경우 연인원을 구하여 상시근로자의 수를 알기 위해서 사용기간 및 인원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각 가구당 연인원은 평균 195.7명으로 나타나서 상시근로자 1인에 훨씬 미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농가의 일일 고용자는 적용제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

다. 그러나 농가의 일일 고용자라는 것이 상호 일손을 돕는 품앗이의 형태가 많음을 감안하면 일일 고용자 자체가 이미 농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4-2> 일일 고용자 고용경험

	봄	여름	가을	전 체
일수 (일)	9.7	7.6	7.4	
인원 (명)	7.8	8.0	8.0	
연인원	75.7	60.8	59.2	195.7

<표 4-3>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구 조	내 용
강제적용 여부	강제적용
재원부담 방안	고용주 부담
요율 결정방식	해당산업 요율 적용
기준소득 결정방식	기존방식 사용
급여의 내용과 수준	기존과 동일하게
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
입법화 방식	적용제외 조항 해지
입법화 시기	행정적 준비 이후 즉시
비 고	타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

다. 요율의 결정

새로 적용되는 기존 미적용 근로자들이 대부분 적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이에 따른 미적용 재해에 대한 보상이 상당수 발생할 것이고, 이것이 재정적자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이들에 대한 요율을 따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로 이미 같은 체계로 편입되어 적용되었어야 할 대상에 대한 뒤늦은 적용이지 성격이 다른 적용대상에 새로이 적용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여야 한다. 만일 이들에 대한 요율을 달리한다면, 그 근거가 명확치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 업종의 타근로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사회적 연대성의 확보라는 사회보험의 중요한 가치와도 상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의 요율은 기존의 해당 산업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3.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산재보험을 설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이들이 자영업자로서의 속성과 근로자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지녔다는 점이다. 기존의 산재보험제도는 적용대상이 모두 근로자라는 것을 가정하고 제도가 설계되었고, 단지 중소기업주의 경우에만 사업주에 대한 적용체계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어떤 체계를 주로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 때 산재보험 구조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적용의 실효성일 것이다. 즉, 산재보험 적용확대가 단지 제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작업중 재해를 실제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 강제적용 여부

산재보험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산재보험을 강제적용시킬 것인가 아니면 임의적용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사실상 보험료의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계시켜서 생각할 문제로서 다음의 4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① 임의적용시키고 보험료 부담을 사업주가 할 경우 ② 임의적용시키고 보험료 부담

을 개인이 할 경우 ③ 강제적용시키고 보험료 부담을 사업주가 할 경우 ④ 강제적용시키고 보험료 부담을 개인이 할 경우 등 각각의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문제 및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임의적용 후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한다면, 이 제도는 보험사와 학습지회사에서 임의로 사업주 부담의 상해보험을 드는 현재의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서 단지 상해보험이 산재보험으로 바뀔 가능성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자발적으로 사업주 부담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한 곳 중 산재보험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부표 참조), 이렇게 제도를 설계할 경우 보장의 실효성은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임의적용후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개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을 현행의 중소기업 산재보험체제로 편입시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이 갖는 중간적 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서, 보장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은 물론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의 집단적 반발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강제적용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면 작업중 재해에 대한 보호가 확실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장의 실효성은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 보험료의 부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사업주가 할 경우와 개인이 할 경우를 상정할 수 있지만, 산재보험에서 개인에게 강제적용시키고 보험료 납부를 강제하는 경우는 사회보험체계가 조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부 국가에 한정될 뿐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보험료 부담을 사업주가 하게 할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강제적용방식을 선택하고 보험료 부담을 사업주가 하게 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주의 실제 부담의 증가와 반발이다.

사업주의 실제 부담의 증가와 관련해서 보면,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현재 이미 보험사와 학습지회사 중 상당수의 사업주는 사업주 부담으로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해 놓은 상태라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표 3-22 참조). 앞

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있다는 점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작업중 재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들 사업주의 경우는 상해보험이 산재보험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는 작업중 재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많은 골프장 사업주들이다. 그러나 앞의 <표 3-23>에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에서 실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상해보험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답한 경우가 31.5%, 정도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다고 답한 경우가 27.4%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답한 곳은 28.8%에 불과하다. 즉, 골프장의 경우도 실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일정 정도의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로 포괄하고 사업주가 비용부담을 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서 회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과 현재 논란 중에 있는 이들의 근로자성 인정과의 관련성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이 근로자인가 아니면 자영업자인가는 법적 해석과 사회적 논의에 의해서 결정될 일이겠지만,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은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산재보험의 구조도 근로자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장의 실효성을 가장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보면,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근로자성 문제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은 산재보험법에 특별조치로 삽입하여 실시하되 적용은 강제로 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비용부담 방안

산재보험의 비용부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이 일정 정도 자영업자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해 발생시 비록 사업주가 현재도 일정 정도의 부담을 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에게 전체를 적용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재원부담방식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이 자영업자적 성격과 근로자적 성격을 모두 가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정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일 보험료 중 일부(예: 50%)를 본인 부담하게 할 경우 전체가 되어야 할 점은 인별 관리체계의 구축이다. 즉, 소득에 대해서 각 개인별로 매월 혹은 분기별 실적을 관리해야 하고, 각 개인이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산재보험제도는 인별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만일 이들에 대해서 인별 관리를 할 경우 단시간 내에 효율적인 인별 관리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가가 의문시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들 업종은 대부분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으로서, 인별관리체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관리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의 재직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의 경우가 보험설계사 41%, 학습지교사 52%, 골프경기보조원 36.7%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고, 이는 이들에 대한 인적 관리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표 4-4>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재직기간

(단위: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경기보조원
6개월 미만	23.7	34.8	14.7
6개월~1년 미만	17.6	17.3	22.0
1~2년 미만	20.3	29.2	24.7
3~5년 미만	20.5	17.5	21.1
5년 이상	17.9	1.2	17.5

자료: KLI 조사

더욱이 고려해야 할 점은 수혜대상자들의 조직적 반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해고, 수당 등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요구가 더 크고, 산재보험 가입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더 절실한 경우는 골프경기보조원 등 일부 위험이 큰 직종에 한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들에게 전체 노동법적 보호 중 일부만 혜택을 주기로 하고 산재보험을 적용시켜 주되, 본인이 일부 부담하라고 할 경우 조직적 반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확대는 분명 이들 개인에게 사회적 보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의 의의와 성과는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

회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할 경우는 인적관리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기존 산재보험체계 내에서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반발 가능성 내지는 비협조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업주는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과소 보고함으로써 보험료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보험사와 학습지회사의 경우 거의 대부분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게 지급한 수당을 서류화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의 확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골프경기 보조원의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실제 근무일지는 있고, 한 번에 받는 수당의 액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일지를 근거로 지급된 금액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표 4-5 참조).

<표 4-5> 소득증명서 존재 여부

(단위: 개소)

	보험모집인 (N=24)		학습지교사 (N=10)		골프경기보조원 (N=73)	
	회사수	해당 모집인 비율	회사수	해당 교사 비율	회사수	해당 보조원 비율
있다	24(100)	100	8(80)	89.9	4(5.5)	3.9
없다	0(0)	0	2(20)	10.1	69(94.5)	96.1

<표 4-6> 산재보험 적용시 바람직한 방식

(단위: 개소, %)

	보험회사	학습지회사	골프장사업주
근로기준법에 연결	1 (4.2)	1 (10)	6 (8.2)
산재보험 특별법	15 (62.5)	5 (50)	45 (61.6)
기 타	4 (16.7)	2 (20)	17 (23.3)
잘 모름	4 (16.7)	2 (20)	5 (6.8)
전 체	24 (100)	10 (100)	73 (100)

자료: KLI 조사

또 하나의 문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반발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근로자성의 인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사회보험 전체에 대해서 근로자의 자격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고 현재에도 상당수 사업자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작업중 재해에 대한 보장인 산재보험만을 적용한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면 사업주의 반발은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만일 산재보험을 실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특별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체 보험료 부담액의 일부에 대해서 손비로 인정해 주어서 세금감면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도 기업복지 사용금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에 대해서 손비인정을 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유사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후 사업주의 부담분에 대해서는 다시 국가가 세금공제를 해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선 기업

으로 하여금 그간 근로자로 고용되었던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특수 고용관계로 계약을 변경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실상 한 기업에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규직 근로자와 특수 고용관계 종사자로 나뉘어 있고, 이 비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로 사료된다. 둘째는 현실적인 문제로서 기업에서 지불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일부 기업에만 산재보험료를 공제해 줄 경우 기업 간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해당 기업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의 일부를 공제해 준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 소득의 산정

산재보험의 급여 산정은 현물로 지급되는 요양급여를 제외하면 모두 소득에 기초해서 보험급여가 산정되게 된다. 이 때 산정에 사용되는 소득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평균소득이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평균소득을 3개월간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액을 총일수로 제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해서 평균임금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점이다. 첫째는 기존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계절별 소득의 편차가 거의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것으로서, 소득의 편차가 큰 직종에는 피재 시기에 따른 보상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다.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소득은 대부분이 가변적인 수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월별·계절별 편차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기존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의한 보상급여의 산정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수당과 임금의 관계에서 법리적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만일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개념을 사용하여 이들이 받은 모든 수당을 소득 산정의 기초로 삼을 경우

이는 이들의 수당을 임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만, 계산방법까지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할 경우 향후 수당과 임금의 관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 중에서도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의 계절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통상근로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예외적인 방식을 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월평균 소득의 격차가 클 경우 재해 시기가 어느 계절인가에 따라 재해보상급여의 격차 또한 커지게 되는데, 이 경우 피재자의 소득의 중단 및 감소에 대해서 보상하여 기본적인 생활상의 곤란을 방지해 준다는 산재보험의 기본 목적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소득이 높은 계절에 재해가 발생한다면 평균소득 이상의 보상이 있게 되고, 소득이 적은 계절에 재해가 발생한다면 평균소득 이하의 보상을 받게 됨으로써 급여의 과부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연평균소득 개념의 채택이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에 대한 근거 자료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우선 통상근로계수라는 것을 도입하여 소득의 계절별 편차를 보정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소득이 과연 계절별 편차가 큰가 하는 점과 크다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조사자료를 보면, 계절별 소득격차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는 계절에 따른 소득편차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29%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이 가장 많을 경우와 적을 경우의 차이액은 약 33만원 정도이고, 학습지교사의 경우는 소득편차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40% 정도이고, 편차의 정도는 약 2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편차가 가장 심한 업종은 야외활동인 골프경기보조원의 경우로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계절별 소득편차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편차 수준 또한 거의 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골프경기보조원은 4월부터 7월, 9월부터 11월까지의 성수기에는 월 200만원 내외

<표 4-7> 계절별 소득편차의 유무와 편차 정도

(단위: 개소)

소득편차 존재 여부	보험설계사 (N=24)	학습지교사 (N=10)	골프경기보조원 (N=73)
소득편차 있음	7 (32.5만원)*	4 (23.33만원)*	71 (89.63만원)*
소득편차 없음	17	6	2

주: ()는 차이가 날 경우 차이 액수

의 소득을 올리지만, 비수기인 한겨울과 장마철에는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한겨울 30만~45만원, 장마철 100만원, 12월 8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⁷⁾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하면,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산재보험 급여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이 경우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연평균소득의 사용이다.

연평균소득을 사용할 경우 계절별·월별 소득의 편차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 발생시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누리던 생활수준에 비추어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평균소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자 개인의 소득에 대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 조건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소득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연평균소득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소득자료가 없는 곳이 대부분인 골프장에 종사하는 골프경기보조원의 경우이다. 골프장 내장객이 지급하는 봉사료가 이들의 소득인데 돈을 받는 방법이 회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손님에게 직접 봉사료를 받거나, 회사에서 징수하였다가 당일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회사에서 징수하였다가 티켓 당번이 당일 경기보조

7) 비정규노동자 공대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2001.

원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드물기는 하지만 급여통장을 통해서 월 1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소득을 직접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할지라도, 골프경기보조원의 봉사료는 회사마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근무일지 등을 통해서 해당 경기보조원의 근무기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소득 파악의 자료로 삼는다면 소득 파악 자체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종사 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연평균소득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입사후 재해 직전일까지의 소득을 근로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소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의 결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또 하나는 기준소득을 이용하여 소득액을 결정하게 하고, 보험료의 징수 및 보험급여의 제공을 이 기준소득에 맞추는 방법이다. 기준소득을 이용할 경우 업무가 많이 단순화되어서 행정적 편의가 증가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기준소득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자영업자라면 급여의 기초가 될 소득수준을 자신이 결정하고 납부하기 때문에, 낮은 기준소득을 선택해서 급여수준이 낮아질지라도 그 책임은 본인 자신에게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부담을 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기준소득을 낮추어서 신고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한다. 기준소득을 낮추어 신고한다면, 피재자가 받게 되는 급여 또한 평소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낮은 급여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그 피해를 보는 것은 기준소득을 결정한 사업주가 아니라 피재자가 된다. 급여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피재자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산재보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것은 물론, 피재자의 불만을 살 소지가 다분하다. 이 경우, 어렵게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이루고도 적용대상자를 만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그 성과를 반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급여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근로자의 평균소득을 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라.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의 인정기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는 많은 경우 근로제공 장소가 일정 장소내에 국한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기인성에 대한 입증이 곤란할 수 있다. 업무기인성의 인정범위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재해 발생시 업무기인성 여부에 대한 시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재해 발생시 업무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각 업무의 성격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데, 골프경기보조원의 경우는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두 집단보다 훨씬 용이한 데 비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의 경우 재해 발생시 업무기인성의 파악은 더 어렵다. 업무기인성을 파악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계약자와의 면담 등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추정하거나 영업활동일지나 영업소장·총무의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다소 제한적인 답을 했다. 학습지교사의 경우는 회원 관리 시간내에 해당 관리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든지, 학부모의 진술이나 상황에 따라 파악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업무기인성과 관련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업무의 특성을 감안한 지침이 만들어져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보호의 실효성이 문제시될 것이고 너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문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마. 요율의 결정

요율의 결정방식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만을 따로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과 이들에게 해당 업종의 요율을 적용시키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만 별도의 요율을 결정한다면, 이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이 가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은 이질적인 집단의 조합으로서,

업종에 따라 재해율이나 재해의 양상이 크게 차이난다. 이질적인 집단에게 같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업종별 요율은 업종별 재해율을 반영한 것으로서 산재보험 급여 지출이 재해시 발생하고 요율은 그 비용징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율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해당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4-8>과 같다.

<표 4-8>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구 조	내 용
강제적용 여부	강제적용
재원부담 방안	1안: 고용주 부담 (조세감면 고려), 2안: 종사자 일부부담
요율 결정방식	해당산업 요율 적용
기준소득 결정방식	연평균소득
급여의 내용과 수준	기존과 동일하게
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
입법화 방식	우선 산재보험법 상의 특별조항 마련
입법화 시기	행정적 준비 및 노사정 합의 도출 이후

4. 자영업자 및 농민 산재보험 적용방안

가. 농민 산재보험 적용방안

1) 적용범위

농민의 산재보험 적용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그 적용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우리나라의 농민은 젊은 층의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현재 60세 이상되는 고령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표 4-9>를 보면 농가 경제활동인구 중 60세 이상 비율은 전체의 45.8%이고, 65세 이상 비율도 27%에 달하고 있다. 농가 경영주 연령분

<표 4-9> 연령계층별 농가 및 자영업자 (무급종사자 포함)

(단위: 천명, 천호, %)

농림어업 취업자		농가 경영주 연령분포	
전 체	2,288 (100)	전 체	1,382 (100)
39세 이하	249 (10.9)	39세 이하	7 (0.5)
40대	410 (17.9)	40대	308 (22.3)
50대	583 (25.5)	50대	363 (26.2)
60~64세	429 (18.8)	60세 이상	704 (51.0)
65세 이상	617 (27.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1;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0.

포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아서 60세 이상 경영주의 비율이 전체의 51%에 이르고 있다.

그간 산재보험은 임금근로자가 경제활동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만 보호해 왔는데, 이제 비임금근로자인 농민의 경제활동 중 발생하게 되는 재해에 대해서도 보호할 경우, 국민연금의 수급대상이 되는 60세 이상 농민의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험에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연금을 통해서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는 사회보험제도는 각각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강조점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경우 장애시 받게 되는 급여와 노령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시 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것이 있

<표 4-10> 근로자 종류·경제활동 여부별 재해시 적용 사회보험 및 급여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경제활동기간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비경제활동기간	의료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기 때문이다. 즉, 비임금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재해를 당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임금근로자가 재해를 당할 경우 받게 되는 산재보험은 소득의 중단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상당히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는 급여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또한 사망자의 부양가족에게 일정 정도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산재보험에 의한 장애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1/2에 해당하는 액으로 조정하여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피재자가 사망하기까지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노령의 피재자에게도 급여는 계속 지급되어 왔다. 그 이유로는 첫째,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관계에서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 일차적인 원인이 사업장에서의 재해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했기 때문이어서, 일차적인 위험발생 원인이 산재사고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는 산재보험에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에 의한다. 둘째, 그간 노령연금 등 타사회보험제도가 수급 개시 이전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이외에는 이들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다른 기제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4대 사회보험이 체계를 갖추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경제활동자의 소득 보장까지도 산재보험에서 해야 할 것인가는 논란이 되고 있으며, 급여의 병급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조정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병급 조정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사회보험의 운영원칙을 기여에 의한 보장보다 보험사고에 대한 소득보장에 두면, 산재보험은 소득생애기에 그리고 국민연금은 노후 기간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생애 동안까지는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산재보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납하고,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후에 대해서는 급여관장기관을 국민연금으로 이관하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혹은 장애연금을 수급하게 하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한다.

기존의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 있어 현재 이미 고령인 농민을 적용대상으로 포괄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노령연금의 보장 범주로 들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들 고령 농민이 작업중 재해를 당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무엇인가에 대한 현실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농민을 대상으로 60세 미만의 농민에게는 국민연금의 가입 여부를, 노령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인 60세 이상의 농민에게는 국민연금 수급 여부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4-11>과 같다. 이를 보면, 국민연금이 가입이 강제된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77%에 지나지 않았으며, 60세 이상 농민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률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지 현금급여에서의 차이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재해로 인한 부상이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게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가 지급되는데, 그 내용은 필요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치료에 대해서 피재자의 비용부담 없이 100% 산재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한다. 그러나 재해시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아니라면,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료보험의 급여는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되기 때문에, 의료적 처치를 위해서는 피재자의 비용부담이 필수적이다. 이는 저소득층이 재해를 당할 경우, 장애가 수반되는 재해뿐만 아니라 장애가 남지 않은 재해의 치료에도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농민을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로 포괄한다고 하고 전체의 약 45%

<표 4-11> 노령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비율

(단위: %)

	예	아니오
국민연금 가입 여부(60세 미만)	76.9	23.1
국민연금 수급 여부(60세 이상)	40.8	59.2

자료: KLI 조사

인 고령 농민을 적용제외시킬 경우, 산재보험 농민 적용확대는 단지 농민을 적용대상으로 추가했다는 명분은 얻을 수 있을지라도 산재보험제도가 농민의 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령 농민 모두를 무제한적으로 적용시킬 경우 보험급여의 증가로 인한 재정적 문제와 비경제활동인구까지도 산재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적용대상 연령의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실업시 보장이라는 목적을 가진 고용보험에서도 존재한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미 보험가입자로 보험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은 65세까지, 신규 가입은 60세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조치는 65세 이후이면 노동능력이 현저히 감소해서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렵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재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 있는 산재보험도 고용보험의 이러한 논리가 원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해고와 관계없이 자기 혼자서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전혀 없는 노인이어도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작업중 재해를 당할 경우, 이는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해서 산재보험에서 보상해야 할 성질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고령자의 소득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용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작업중의 재해로 인한 의료적 처치 및 금전적 어려움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60세 이상 자라 하더라도 현재 취업자인데 가입조차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현재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65세 이상인 고령 농민을 제외한 전체 농민이 되어야 할 것이고, 산재보험 가입 후 65세 이상 된 농민의 경우에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 비용부담 방식과 강제가입 여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임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비용은 고용주가 100% 부담하는 구조이고, 다만 사회보험에서 산재보험 재정이 구분 계리되지 않고 타보험과 완전히 통합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자신의 부담분이 있다. 이는 근로자의 작업중 재해에 대해서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용주 책임원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고용주는 산재보험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재해 발생시 치료비 및 보상비용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위험 분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고용주를 확실히 지정할 수 있는 임금근로자에게 가능한 구조로서, 자기 자신이 근로자이자 고용주이기도 한 자영업자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그 비용부담은 자영업자 자신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민은 대표적인 자영업자로서, 농민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산재보험 비용부담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농민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농민의 산재보험 가입은 농업이 재해의 위험이 높은 작업인 점과 작업중 재해를 당할 경우 치료비와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로 인해서 농가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농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가 보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농가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산재보험 가입의사는 산재보험에 대해서 잘 알 경우 더 높아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27%에 불과하였다(표 3-13 참조). 또한 월 5천원 정도의 보험료일 경우 가입의사는 32%로서 평균 가입의사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보험료가 월 5천원에서 1만원 사이일 경우 가입의사는 16.4%로 현저히 감소하고, 보험료가 월 1만 5천원에서 2만원 사이일 경우 가입의사는 불과 5.7%에 지나지 않는다(표 3-14 참조).

이렇게 월 보험료가 얼마인가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의사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면, 농민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농민을 산재보험에 강제적용시키거나 아니면 보다 싼 보험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농민은 자영업자로서 보험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생각할 때 산재보험을 강제적용시킬 경우, 산재보험이 갖는 여러 가지 장 점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의료보 험 및 노령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에의 가입이 분명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농민들이 사회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 각을 가졌다는 실정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더욱이 산재보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노령에 대한 보장(국민연금) 이나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급여(건강보험)가 아니라, 그 가능성이 현저 히 낮은 작업중 재해에 대한 보장이다. 작업중 재해는 사회보험이 보호하 고 있는 다른 위험보다 비록 그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으로 인한 생 활상의 곤란은 타사회보험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다. 따라서 그러한 위험 이 자신에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 의 가입을 불필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농민의 저 소득은 이러한 손해보험적인 성격의 산재보험의 가입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벽이 될 수 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농민의 월소득은 30만원 미만이 전체의 18.8%이 고, 50만원 미만이 20.8%,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31.6%로 나타나 고 있다. 이는 농민의 소득이 매우 낮아서 월 소득 100만원인 경우가 약 71%이고, 약 40%의 농민은 월 소득 50만원 미만의 저소득인 것으로 나 타났다(표 4-12 참조). 월 소득 50만원 미만의 농민에게 산재보험료의 부담은 그것이 얼마가 되든지 부담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농민이 저소득인 것은 그간의 수출주도형 산업화 및 이농, 농촌 경제에 대한 무관심 등 정책적 요인으로 인한 농촌 경제의 악화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식량안보적 차원에서의 농업의 중요성과 농민의 상대 적 박탈감과 불만, 경제적 어려움, 산재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농민의 산재보험 적용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부분 정부가 농민의 산재보험에 대 해서 보조해주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정부가 농민의 산재보 험료에 대해서 보조해줄 경우, 농민의 산재보험 적용방식을 강제적용으

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4-12> 농민의 월소득

(단위: 명, %)

월소득	빈 도
30만원 미만	376 (18.8)
30만~49만원	416 (20.8)
50만~99만원	631 (31.6)
100만~149만원	289 (14.5)
150만~199만원	128 (6.4)
200만원 이상	76 (6.9)

자료: KLI 조사자료

3) 급여기초소득의 결정

임금근로자의 경우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평균임금의 개념을 사용하되, 일용근로자에 한해서 소득의 계절적 편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구해서 사용하고 있다. 농업은 계절적으로 수확기가 정해진 산업이어서 계절별로 작업량의 차이와 그로 인한 소득의 편차가 존재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표 4-13 참조).

<표 4-13> 근로시간 형태

(단위: 명, %)

형 태	빈 도
규칙적임	115 (46.6%)
불규칙적 /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음	6 (2.4%)
불규칙적 / 계절의 영향을 받음	126 (51.0%)
전 체	247 (100%)

자료: KLI 노동패널 4차년도 조사자료

이들의 계절에 따른 소득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연평균소득을 사용하거나 기준소득을 사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연평균 소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징수와 급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농민의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증빙자료에 의해서 소득을 계산하여 징수 및 급여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농민의 산재보험 적용구조를 임의적용방식으로 할 경우, 사실상 소득의 증빙을 요구하기보다는 몇 가지 소득액 중 자신에게 적합한 소득액을 농민 자신이 선택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징수 및 급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이 때 기준임금은 중소기업주의 기준임금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표 4-14 참조). 이렇게 기준임금을 사용하는 방식은 타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적용시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14> 중소기업주 기준임금: 2000

(단위: 원)

구 분	월 평균 임금액	일일 평균 임금액
1등급	840,000	28,000
2등급	1,050,000	35,000
3등급	1,500,000	50,000
4등급	1,950,000	65,000
5등급	2,400,000	80,000
6등급	3,150,000	105,000
7등급	3,684,000	122,807

자료: 노동부 고시 제2000-53호

4) 요율결정방식

농민 등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요율을 결정하는 방식은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생각해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단일요율을 정하는 방식과 이들을 해당 산업의 요율로 적용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영업자 전체에 단일요율을 정하는 방식은 자영업자 간의 연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라는 것은 종사상의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영업은 사실상 전 산업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재해율 또한 산업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것은 자명하다. 이들을 위험도와 관계없이 같은 요율로 징수할 경우, 위험이 낮은 산업 종사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들에게 해당 산업의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산업내 연대성을 강조한 것인데, 동일 산업 종사자들의 재해 위험의 차이는 타산업에 종사 하되 종사상의 지위가 같은 자들의 재해 위험의 차이보다 상대적으로 균등할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요율은 해당 산업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가입시 건강진단

농민의 산재보험 가입을 임의가입방식으로 할 경우 우려되는 것의 하나는 지병이 있거나 재해의 위험이 높아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의 가능성이다. 농민 조사를 보면 전체의 약 40%가 지병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개연성을 더 높이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용의사를 가진 농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을 적용의 전제사항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15> 농민 지병 보유율

(단위: 명, %)

	지병보유
지병 있음	98 (39.7)
지병 없음	149 (60.3)

자료: KLI 노동패널 4차년도 조사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4-16>과 같다.

<표 4-16> 농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구 조	내 용
강제적용 여부	임의적용
적용연령	65세까지 적용, 단 공적연금 수급자는 제외
재원부담 방안	피보험자 + 정부보조(농어촌 특별기금 가능성 타진)
요율 결정방식	업종별 요율 적용
기준소득 결정방식	소득기준 중 본인 선택
급여의 내용과 수준	기존과 동일하게
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 농수협의 대행 가능성 검토

나.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농민을 제외한 기술자, 상인 등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앞에서 논의한 농민의 산재보험 적용구조와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농민이 대표적인 자영업 업종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구조 또한 당연히 농민의 그것과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는 농민의 산재보험 적용구조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1) 적용범위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실시할 경우, 대상 자영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또 한 가지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당장은 재해의 위험이 큰 자영업자를 우선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더 정책적 무리가 없을 것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 체계에서 자영업자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현재 1만 3천여명인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약 56% 증가하여 2만 1천여명이 된다(표 2-2 참조). 비록 가입대상 모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산재보험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인력, 전산망 등 상당한 행정적 준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행정적 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목표는 전체 자영업자를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망 속으로 포괄하는 것이지만, 당장은 재해율이 높은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재해율이 높은 자영업자를 우선적용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 그 구체적인 범위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는 또 하나의 논제이다. 외국에서는 자영업자를 크게 기술자와 상인으로 구분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에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술자와 상인의 구분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사전의 환경조건을 이용하여 직무의 위험성을 분류하여 보았다.

환경조건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의 환경요인을 분석, 제시한 것으로서 작업장소, 저온 및 온도 변화, 고온 및 온도 변화, 축축·다습함, 소음·진동, 위험성, 대기조건 등이 포함되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표 4-17>과 같다.

<표 4-17>에서 제시된 환경조건 중 작업장소를 제외한 저온 및 온도 변화, 고온 및 온도 변화, 축축·다습함, 소음·진동, 위험성, 대기조건 등의 환경조건을 가진 직업은 재해의 위험이 타직업에 비해서 높다고 보아

도 좋을 것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우선 이들 환경조건이 열악한 직업에 대해서 먼저 실시하고, 이후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4-17> 직업의 환경조건

<p>1. 작업장소 I(실 내): 눈, 비, 바람과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작업의 75% 이상이 실내에서 이루어진다. O(실 외): 눈, 비, 바람과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며 작업의 75% 이상이 실외에서 이루어진다. B(실내외): 작업이 실내외에서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진다.</p> <p>2. 저온 및 온도 변화: 신체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저온이거나 두드러지게 신체적 반응을 야기시킬 정도로 저온으로 급변한다.</p> <p>3. 고온 및 온도 변화: 신체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고온이거나 두드러지게 신체적 반응을 야기시킬 정도로 고온으로 급변한다.</p> <p>4. 축축함·다습함: 신체의 일부분이 수분이나 액체에 직접 접촉되거나 신체에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대기중에 수증기가 충전한다.</p> <p>5. 소음·진동: 심신에 피로를 주는 청각장애 및 생리적 영향을 끼칠 정도의 소음, 전신을 떨게 하고 팔과 다리의 근육을 긴장시키는 연속적인 진동이 있다.</p> <p>6. 위험성: 작업원이 신체적인 손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계적, 전기적, 화상, 폭발, 방사선 등의 위험이 있다. 기계적 위험: 기계 및 장비에 의한 위험과 무거운 물체의 낙하 위험 전기적 위험: 고압전선 및 전기설비에 의한 감전 위험 화상 위험: 고열 재료 및 장치와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 위험</p>
--

폭발 위험: 가스 압축공기 등 폭발성 물질의 폭발 위험
 방사선 위험: 라듐, 우라늄, 토륨 등 방사선 물질과 X선, 자외선, 적외선 등에 의한 시력장애 및 신체적 위험
 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신체적 위험
 7. 대기조건: 작업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이 작업장의 대기중에 다량 포함되어 있다.
 냄새: 작업장 특유의 냄새가 불쾌할 정도로 난다.
 분진: 유지, 나무, 가죽, 석면 등의 부스러기, 분말, 미분자가 대기중에 다량 포함되어 있다.
 연무: 연소, 화학반응 과정에서 연기, 증기가 많이 나고 냄새를 동반한다.
 가스: 유독성 및 무독성의 가스가 발생한다.
 환기불량: 통풍이 잘 안되고 질식감을 느낄 정도로 공기의 이동이 충분하지 못하다.
 기타: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불쾌한 대기조건.

자료: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2001 한국직업사전』.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령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자의 비율이 18.4%이고 이 중 65세 이상 되는 자는 1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영업자 통계에 농림어업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고령자의 비율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연령은 농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연령과 동일하게 65세 미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현재 공적연금 수급자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2) 강제적용 여부 및 비용부담 방안

산재보험은 처음에 임금근로자의 작업중 재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이것이 그 유용성을 인정받으면서 점차 비임금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EU 국가를 보면 전체 20개국 중 농민을 제외한 기술자, 상인 등의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이루어지는

<표 4-18> 비임금근로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비임금근로자 합계
전 체	5,999 (100.0)	1,919 (100.0)	7,919 (100.0)
39세 이하	1,750 (29.2)	647 (33.7)	2,397 (30.3)
40대	1,921 (32.0)	571 (29.8)	2,492 (31.5)
50대	1,215 (20.3)	356 (18.6)	1,571 (19.8)
60~64세	500 (8.3)	156 (8.1)	656 (8.3)
65세이상	613 (10.2)	189 (9.8)	802 (1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1.

국가는 12개국이고, 그 중 강제적용이 되는 국가가 5개국, 임의적용되는 국가가 7개국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표 3-17 참조). 이는 자영업자가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 또는 상점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타인과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서 산재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산재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보험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는 조세에서 사회보험을 직접 관장하는 체제 이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에 관한 한 국가는 관리운영비 이외의 지출은 거의 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⁸⁾ 이상의 것을 종합해 보면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우선임의적용으로 하고, 산재보험료 부담은 자영업자 자신이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기타 고려사항

8) 이에 대한 예외는 농민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 10년의 시한을 정하고 국가에서 일부 보조하고 있다.

농민은 자영업자의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앞에서 논의한 농민의

<표 4-19>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고위험 자영업자
강제적용 여부	선택적
재원부담 방안	피보험자 본인
요율 결정방식	해당산업 요율적용
기준소득 결정방식	소득기준 중 본인선택
급여의 내용과 수준	기존과 동일하게
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사무조합 적극활용
입법화 시기	충분한 조사 및 대책마련 이후
비고	중소기업사업주와 유사한 방식

산재보험 구조는 일반적으로 타자영업자를 위한 산재보험 구조에도 부합하는 점이 많다. 징수 및 급여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결정방식, 요율체계의 결정방식, 산재보험 가입시 건강검진 실시 등은 같은 자영업자인 농민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앞의 <표 4-19>와 같다.

제5장

요약 및 결론

산재보험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광업과 제조업에 대해서, 또한 지불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대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이루어졌으나,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00년 7월 이후는 소수의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하면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포괄범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적용범위의 확대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및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현대 산업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며, 보상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잘 기능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작업중 재해를 당할 수 있는 대상은 비단 근로자뿐만이 아니다. 혼자서 혹은 소수의 가족 종사자만을 거느리고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농부, 직접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노동한다는 면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구분이 모호한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자영업자로 사업주와 계약관계를 맺고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일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이 작업중 재해로 인해서 건강 및 근로능력이 상실될 경우 겪게 될 어려움은 근로자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집단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작업중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과 같은 집합적 보장기제가 부재한 채, 보장은 개개인의 사적 책임으로 되어 있다. 즉, 각 개인이 저축이나 보험을 통해서 스스로 보장책

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산재사고나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충분한 치료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중단 때문에 빈민층으로 전락하여 국가의 공적부조 대상자가 될 가능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작업중 재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개인적 대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 영세사업주,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등에 대해서 산재보험의 보호체계 내로 포괄할 필요성은 자명하다 하겠다. 2000년 현재 산재보험이 포괄하는 인구를 보면 비록 거의 모든 근로자를 포괄한다고는 하지만 자영업자를 포괄하지 못한 까닭에 총취업자 중 45%만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은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와는 다른 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작업중 재해를 당할 경우 이에 대한 보장책이 필요하다는 면에서는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자신이 곧 사업주라는 면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는 다른 면이 있다. 즉, 이들을 위한 집합적 보장책은 재원의 출처 또한 이들 자신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제도의 내용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무조건적으로 기존의 산재보험제도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실태 및 생활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보다 적합한 제도에 대한 모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들을 포괄하는 산재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첫 걸음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을 산재보험 미적용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로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되었던 근로자들은 첫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연면적 100평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둘째,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셋째, 가사서비스업 종사자이다. 이들이 현재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가장 큰 이유는 적용의 현실적인 어려움

과 그로 인한 적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농민과 자영업자의 경우는 그간의 산재보험 적용이 근로자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이었고,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은 근로자적인 성격을 갖는 면이 있지만 그간 자영업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적용제외되었던 것이다.

적용확대에서 우선 생각할 점은 현재까지 적용제외된 대상을 모두 동시에 산재보험 적용범위로 포괄할 것인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포괄할 것인가인데, 이는 행정적인 능력과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일이다. 적용확대에 있어서 그 어떤 국가나 제도도 모든 집단을 일시에 적용범위로 포괄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보다 단시간 내에 모든 집단을 적용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적용확대 자체는 집단별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보다 무리없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진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각 집단별 적용순서를 정하는가이다. 적용확대의 기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확대는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업종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산재보험 적용확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적용확대가 시행될 경우 실질적인 보호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집단에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셋째, 국내 타근로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확대를 먼저 실시한 외국의 적용범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용확대 순서 선정의 기준을 가지고 각 집단을 살펴본 결과, 우선 질병이나 부상이 심각해서 적용확대가 절실한 집단은 현재 적용제외된 근로자와 농민, 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들이다.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또한 업종에 따라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재해율에 따른 산재보험의 필요성은 적용제외된 근로자, 농민, 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일반 자영업자의 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호의 실효성은 실제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실시하였을 때 적용·징수의 가능성을 보는 것으로서, 계약자가 확실한 특수고용관계 종사자가 가장 높고, 농민 및 위험 자영업자, 현 적용제외 근로자, 일반 자영업자의 순으로 될 것으로 여겨진다. 현 적용제외 근로자는 비록 고용

주가 확실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적용제외된 이유가 적용·징수의 어려움이었음을 비추어 볼 때 실효성이 그다지 높게 나타날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셋째, 국내 타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볼 때는 근로자이면서도 적용제외 대상이 되어 있는 현 적용제외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근로자성을 일부 가지고 있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순서이고, 그 다음이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농민, 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 및 일반 자영업자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산재보험 적용범위와 비교해 볼 때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강제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를 임의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산재보험 적용범위와 비교해 보면 현 적용제외 근로자, 농민 및 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일반 자영업자의 순으로 적용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적용확대의 순서는 현 적용제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확대하고, 그 다음에 농민 및 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마지막으로 일반 자영업자의 순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때 농민 및 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중 어느 집단을 먼저 실시할 것인가는 현실적 입법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각 집단별로 적용확대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산재보험체계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이들이 그간 적용제외된 이유가 행정적인 어려움 때문으로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기존 근로자 대상의 산재보험제도와 다른 구조로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미적용 재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산재보험제도의 큰 틀이 바

끼지 않는 한 이들에게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농림업 종사 근로자 중 품앗이 근로자의 경우는 품앗이 근로자를 쓰는 농가 대부분이 상시 근로자 1인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적용제외시키되 품앗이 일을 하는 농업근로자 자신이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해서 보호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율제도 또한 기존의 업종 요율을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을 설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이들이 자영업자로서의 속성과 근로자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지녔다는 점이다. 기존의 산재보험제도는 적용대상이 모두 근로자라는 것을 가정하고 제도가 설계되었고, 단지 중소기업주의 경우에만 사업주에 대한 적용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어떤 체계를 주로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산재보험 구조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적용의 실효성일 것이다. 즉, 산재보험 적용확대가 단지 제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작업중 재해를 실제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산재보험의 적용에 대해서 회사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과 이들의 근로자성 인정과의 관련성 때문일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들이 근로자인가 아니면 자영업자인가는 법적 해석과 사회적 논의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이지만, 이들에게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은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산재보험의 구조도 근로자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장의 실효성을 가장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근로자성 문제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은 산재보험법에 특별조치로 삽입하여 강제적용시키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재보험의 비용부담 방안에서도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이 자영업자적 성격과

근로자적 성격을 모두 가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인별 관리체도가 구축되어야 실시가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따르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현재는 불가능하고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인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개인 부담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관리의 어려움과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의 조직적 반발 가능성 때문에 적용의 의의와 성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제도는 일반 근로자 대상 산재보험제도와 거의 유사한 구조로 채택하되 사업주에 대한 일정 정도의 조세감면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이들에 대한 소득의 산정은 기존 근로자의 평균소득 산정방식이 아닌 연평균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의 인정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초기에 업무의 특성을 감안한 지침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영업자 및 농민의 산재보험 적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자영업자를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로 포괄할 것인가,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당장은 재해의 위험이 큰 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 체계에서 자영업자 모두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약 56% 증가하게 된다. 비록 가입대상 모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산재보험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인력, 전산망 등 상당한 행정적 준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행정적 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목표는 전체 자영업자를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망 속으로 포괄하는 것이지만 당장은 재해율이 높은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산재보험에 적용시키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우선 농민과 재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직업사전에 분류된 직종을 우선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적용방식은 자영업자는 자신이 곧 고용주이기 때문에 재원부담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면에서 임의적용하도록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

해서는 적용신청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별 무리 없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이 때 가입이 가능한 연령은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농민의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이 약 절반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65세까지로 하되 현재 공적연금 수급자는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결코 쉽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소득은 중소기업주와 마찬가지로 기준임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요율도 해당 산업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단, 농민에 대해서는 농촌경제의 악화로 인한 농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 경제적 어려움, 산재의 심각성 및 식량안보적 차원에서의 농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정부가 농민의 산재보험료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때 정부가 농민의 산재보험료에 대해서 보조해 줄 경우 농민의 산재보험 적용방식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표 5-1>과 같다.

<표 5-1> 산재보험 적용방안

구 조	적용제외 근로자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농 민	고위험자영업자
강제적용	강제적용	강제적용	임의적용	임의적용
적용연령	규정 없음	규정 없음	65세까지. 단 연금 수급자 제외	65세까지. 단 연금 수급자 제외
재원부담 방안	고용주 부담	1안: 고용주 전액 부담 (조세감면 고려), 2안: 종사자 일부 부담	1안: 피보험자 2안: 일부 정부보조	피보험자 본인
요율결정	해당 산업 요율	해당 산업 요율	해당 산업 요율	해당 산업 요율
소득결정	기존방식 사용	연평균소득	기준소득 사용	기준소득 사용
급여수준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하게	기존과 동일하게	기존과 동일하게
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농수협 대행 가능성 검토	근로복지공단, 사무조합 적극 활용
입법화 방식	적용제외 조항 해지	우선 산재보험법상의 특별조항 마련		
입법화 시기	행정적 준비 이후 즉시	노사정 합의도출 이후	충분한 조사 및 대 출마련 이후	충분한 조사 및 대책마련 이후
비고	타근로자와 동일한 방식		중소사업주와 유사 방식	중소사업주와 유사 방식

참 고 문 헌

- 근로복지공단 (1998), 『산재보험 정책연구자료』.
- 근로복지공단 (1996), 『노재보험 특별가입제도 해설(일본)』.
- 근로복지공단 (1996), 『독일산재보험법』.
- 김용하 외 (1997), 『산재보험 운영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2001), 『2001 한국직업사전』.
- 박찬임 (2000), 「산재보험제도와 비정규근로」, 안주엽 외,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 한국노동연구원.
-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0),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 윤상용 외 (2000), 『농업기계에 의한 재해현황과 안전대책 방안』,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이기영 외 (1998), 『산재보험제도 운영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정명채 외 (1991), 『농어촌 복지제도 발전에 관한 연구: 총괄 및 사회보험 부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
- 허재준·안학순 (1999), 「사회보험 급여체계의 연계 및 장기적 개선방안」, 방하남외, 『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1999),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1999*.
- Eurostat (1998), *Labour Force Survey*, European Commission.
- Foster, Howard (ed.) (1991), *Employee Benefits in Europe and USA*,

London: Longman.

Langendonck, J. Van (2000), "The Future Shape of Social Security" in proceedings of *The Year 2000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on Social Security*,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MISSOC (2001), *Social Protection in the Member States in the EU Member States and the European Economic Area*.

Rdjda, George E. (1999), *Social Insurance and Economic Security*, New Jersey: Prentice Hall.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1999),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 1999*.

<http://europa.eu.int>

<http://www.dir.state.al.us/wcombud.htm>

<http://www.workingvoice.net>

<부표 1> 연도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비율

	취업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비율	비임금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율
1970	9,617	3,746	39.0	5,871	61.0
1975	11,692	4,750	40.6	6,942	59.4
1980	13,683	6,464	47.2	7,219	52.8
1985	14,970	8,104	54.1	6,866	45.9
1987	16,354	9,191	56.2	7,163	43.8
1988	16,870	9,160	54.3	7,710	45.7
1989	17,511	10,354	59.1	7,157	40.9
1990	18,036	10,865	60.2	7,171	39.8
1991	18,576	11,287	60.8	7,289	39.2
1992	18,961	11,568	61.0	7,393	39.0
1993	19,253	11,751	61.0	7,502	39.0
1994	19,837	12,297	62.0	7,540	38.0
1995	20,377	12,736	62.5	7,641	37.5
1996	20,764	13,043	62.8	7,721	37.2
1997	21,048	13,228	62.8	7,820	37.2
1998	19,994	12,191	61.0	7,803	39.0
1999	20,281	12,522	61.7	7,759	38.3
2000	21,061	13,142	62.4	7,919	37.6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연도.

<부표 2> OECD 국가의 산재보험 적용범위

국 가	적용범위
한 국	모든 피고용인, 단, 자영업자는 제외, 공무원 별도 체계
호 주	피고용인, 단,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오스트리아	피고용인, 자영업자, 견습생, 학생, 공무원 별도 체계
벨기에	피고용인(비정규직 포함), 공무원 별도 체계
캐나다	피고용인(주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가정부, 프로스포츠 선수는 제외, 공무원, 선원은 별도 체계
체 코	피고용인, 산업생산협동조합원, 농민, 자영업자
덴마크	피고용인, 어업종사 자영업자, 부모의 산재로 인한 선천성 장애자
핀란드	피고용인, 농민과 공무원 별도 체계
프랑스	피고용인, 직업교육중인 학생, 사회서비스조직의 무급종사자, 농민, 광부, 철도, 공무원, 자영업자, 선원은 특별 체계
독 일	피고용인, 몇 종류의 자영업자, 견습생, 학생, 유치원생, 농업 무급가족종사자, 단, 공무원은 별도 체계
그리스	피고용인
헝가리	피고용인, 협동조합원, 학생, 장인, 자영업자, 자영농, 예술가, 변호사
아일랜드	피고용인, 자영업자
아일랜드	피고용인, 단, 자영업자, 가사노동자, 국방종사자는 제외
이탈리아	수공업노동자, 위험한 업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단, 선원은 별도 체계
일 본	피고용인, 단, 5인 미만 농업, 수산업, 임업의 피고용인은 선택적, 선원과 공무원 별도 체계
룩셈부르크	피고용인, 견습생, 가사노동자, 자영업자, 단, 공무원, 학생, 군인은 별도 체계
멕시코	피고용인, 생산자·농민·협동조합 성원, 단, 강제적용 아닌 사람도 원하면 적용가능, 석유노동자, 공무원, 군인은 별도 체계
네덜란드	모든 국민, 질병과 장애프로그램하의 1966년 법률과 1968년 법률에 의거함
뉴질랜드	산재가 일어난 모든 국민(아동, 비근로 성인, 방문자 등 포함)
노르웨이	피고용인, 노르웨이 운송수단 직원, 탑승자, 학생, 군인, 자영업은 임의가입 가능.
폴란드	피고용인, 농민, 장인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 자영업장인, 변호사, 가사노동자
포르투갈	피고용인, 자영업자는 임의가입 가능
슬로바키아	피고용인과 자영업자
스페인	피고용인, 몇몇 직업범주에는 특별 체계
스웨덴	모든 피고용인과 자영업자
스위스	모든 피고용인, 단, 자영업은 선택적 적용, 만일 노동시간이 주당 12시간이 넘지 않으면, 보험은 단지 산재와 관련된 것만 해당됨.
터 키	피고용인, 견습생, 기술학교 학생, 단, 가사노동자는 제외, 공무원과 농민은 별도 체계
미 국	피고용인과 공무원, 농민, 가정부, 비정규직근로자, 3~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제외하는 주도 있음.
영 국	피고용인, 단, 자영업자는 제외

출처: Social Security throughout the World

<부표 3> 공사규모별 공사기간(금액)

(단위 : 백만원, %)

	전 체		1,000 미만		1,000~5,000		5,000 이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전 체	35,009,748	100.0	669,554	100.0	3,416,351	100.0	30,923,843	100.0
1월 미만	1,937,506	5.5	375,513	56.1	794,347	23.3	767,646	2.5
1~3월	5,879,327	16.8	257,916	38.5	1,912,228	56.0	3,709,183	12.0
3~6월	5,083,856	14.5	20,828	3.1	434,884	12.7	4,628,144	15.0
6~12월	8,050,469	23.0	10,115	1.5	168,474	4.9	7,871,880	25.5
12~24월	9,736,033	27.8	4,999	0.7	102,248	3.0	9,628,786	31.1
24월 이상	4,322,553	12.3	176	0.0	4,164	0.1	4,318,213	14.0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통계연보』, 2000.

<부표 4> 농민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빈 도
성별	남 자	948 (47.4)
	여 자	1052 (52.6)
지역	경 기	262 (13.1)
	강 원	129 (6.5)
	충 북	141 (7.1)
	충 남	278 (13.9)
	전 북	206 (10.3)
	전 남	309 (16.0)
	경 북	368 (18.4)
	경 남	236 (11.8)
	제 주	61 (3.1)
가구원수	1인	138 (6.9)
	2인	875 (43.8)
	3인	274 (13.7)
	4인	278 (13.9)
	5인	229 (11.5)
	6인 이상	206 (10.3)
연령	40세 이하	256 (12.8)
	41~ 50세 이하	384 (19.2)
	51~60세 이하	501 (25.1)
	61~70세 이하	567 (28.4)
	71세 이상	292 (14.6)

(N=2000)

<부표 5> 현재 재해보장방식과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견해(골프장사업주)

(단위: 개소, %)

현재 보장방식	회사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견해	회사수
회사 100% 부담 상해보험 가입	11(15.1)	바람직하지 않음	5
		바람직함	6
		무응답	-
회사 50% 부담 상해보험 가입	3(4.1)	바람직하지 않음	2
		바람직함	1
		무응답	-
개인별 상해보험 가입 강제함	3(4.1)	바람직하지 않음	2
		바람직함	1
		무응답	-
개인별 상해보험 가입 권장함	31(42.5)	바람직하지 않음	16
		바람직함	13
		무응답	2
특별한 대책 없음	17(23.3)	바람직하지 않음	6
		바람직함	11
		무응답	-
기 타	8(11.0)	바람직하지 않음	4
		바람직함	2
		무응답	2
전 체	72(100)	바람직하지 않음	36
		바람직함	34
		무응답	4

자료: KLI 조사

<부표 6> 현재 재해보장방식과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견해(학습지회사)

(단위: 개소, %)

현재 보장방식	회사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견해	회사수
회사 100% 부담 상해보험 가입	4(40)	바람직하지 않음	3
		바람직함	-
		무응답	1
특별한 대책 없음	1(10)	바람직하지 않음	-
		바람직함	1
		무응답	-
기 타	5(40)	바람직하지 않음	1
		바람직함	3
		무응답	1
전 체	10(100)	바람직하지 않음	7
		바람직함	2
		무응답	1

자료: KLI 조사

<부표 7> 현재 재해보장방식과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견해(보험사)

(단위: 개소, %)

현재 보장방식	회사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견해	회사수
회사 100% 부담 상해보험 가입	3(12.5)	바람직하지 않음	3
		바람직함	-
		무응답	-
특별한 대책 없음	15(62.5)	바람직하지 않음	10
		바람직함	4
		무응답	1
기 타	6(25.0)	바람직하지 않음	5
		바람직함	-
		무응답	1
전 체	24(100)	바람직하지 않음	19
		바람직함	4
		무응답	1

자료: KLI 조사

附 錄

- ①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 조사서: 보험설계사용
- ②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 조사서: 골프경기보조원용
- ③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 조사서: 학습지교사용
- ④ 농업종사자 산업재해에 대한 실태조사

Ⅰ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 조사서

< 보험설계사용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현재 독립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회사와 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른바 ‘특수고용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은 현재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부상이나 사고,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산재보험제도 적용은 현재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이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특수고용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인원 파악 및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적용확대가 가능한 것인지, 어떠한 형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본 설문지는 산재보험과 관련한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설문지 시간은 가지고 계신 정보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경우 대략 8~1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비밀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단, 설문지 내용에 따라서 추후에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연구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경우 (02)783-8827로 전화를 주시거나, cpark@kli.re.kr로 e-메일을 보내주시십시오.

바쁘신 중 설문 응답에 시간을 내주셔서 매우 감사 드립니다.

2001. 9.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찬임

조사표 번호(ID number)	
조사일시	
조사자	

※ 다음의 설문문항 중

a.	b.
----	----

는 설문문항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설문의 응답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a 옆에 √표시를 해주시고, 응답자의 추측에 의한 답변은 b옆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1. 응답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응답하는 경우,

a	√ b
---	-----

2. 응답자가 추측에 의해서 응답을 하는 경우,

a	b
---	---

 √

다음 설문문항은 귀사 전체(지국포함)의 보험설계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귀 회사의 전체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a	b
---	---

직원(임시직 포함, 보험모집원 제외)의 수 (_____명)

1-2. 귀 전체 회사의 보험 설계사는 전체 몇 명입니까?

a	b
---	---

① 전체 (_____명)

② 남성/여성 보험설계사의 비율 (남성 _____% 여성 _____%)

2. 귀 회사 보험설계사의 직위별 구성과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 ※ 단, 정규회사 직원을 제외한 보험 모집원의 상태에서 가능한 직위에 한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가장 높은 직위 ← ← 중간 직위 → → 가장 낮은 지위			
직위	지점장	차장	팀장	일반모집원
예상 총수입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고정수당 수	5개	4개	3개	2개
명수(혹은 %)	60명	300명	600명	1200명
예상진급기간	8년	4년	2년	입사후

▷ 귀사에 관한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a	b
---	---

	가장 높은 직위 ← ← 중간 직위 → → 가장 낮은 지위			
직위				
예상총수입				
고정수당 수				
명수(혹은 %)				
예상진급기간				

3-1. 귀사의 보험설계사는 일반적으로 주당 며칠을 일합니까? (√ 표시, ⑤제외)

- ① () 주당 6일 이상 ② () 주당 5일 ③ () 주당 4일
 ④ () 주당 3일 이하 ⑤ () 기타
 (적어주십시오 _____)

3-2. 귀사의 보험설계사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합니까?
 (하루에 _____시간)

4-1. 귀사의 보험설계사의 수입은 특정한 월이나 계절에 대해서 차이를 보입니까? (√ 표시)

- ① () 그렇다.(4-2로) ② () 아니다.(5-1로)

4-2. 보험설계사의 수입에 차이가 날 경우 가장 수입이 가장 많은 달(계절)은 언제이며, 가장 적은 달(계절)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차

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a	b
---	---

- ① 가장 많이 수입을 올리는 달(계절), (_____)
- ② 가장 적게 수입을 올리는 달(계절), (_____)
- ③ 두 달(계절)의 대강의 수입의 차이는 (_____만원) 정도이다.

5-1. 귀사에서 보험설계사는 겸업(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하고 있습니까?

- ① (____) 회사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 겸업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는 거의 없다.
- ② (____) 회사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부 겸업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가 있다.
- ③ (____) 회사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겸업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는 거의 없다.
- ④ (____) 회사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겸업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가 있다.

⑤ (____)

기

타

5-2. 귀사에서 보험설계사가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몇 %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a	b
---	---

 전체의 (_____%)

6. 다음은 보험 설계사의 근속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a	b
---	---

근속기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현재 귀사의 전체 보험설계사를 근속기간별로 비율을 써 주십시오.	%	%	%	%	%

7-1. 귀사는 보험설계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① () 그렇다.(7-2로) ② () 없다.(8로)

7-2. 계약기간이 있으시다면, 통상적으로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평균 ____년 ____개월)

8. 귀사에서 보험설계사에 제공하는 복지 및 제반 혜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련된 모든 항목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기타)란에는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시간외수당		정기건강진단		출산/육아휴가	
교통비		해외연수		택아비용	
피복비		주 1회 휴가		상해(손해)보험	
식사비		생리휴가		연금보조	
상여금		의료보험		(기타)	
퇴직금		국민연금		(기타)	
휴가비용		고용보험		(기타)	
자녀학자금		산재보험		(기타)	

9. 귀사는 보험설계사가 회사로부터 받게 된 소득(각종 수당)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계십니까?
 ① () 그렇다. ② () 없다.

□ 다음은 귀사의 보험설계사의 업무에 관련된 질병, 부상, 사고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작년 1년 동안(2000년 1월~2000년 12월 31일) 보험설계사에게 업무에 관련된 질병, 부상, 사고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혹은 추정하십니까)?

a	b
---	---

총 (_____ 건) 발생

2. 보험설계사에 발생되었던 업무에 관련된 질병, 부상, 사고는 대체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 실제 일어난 발생건수나 자료가 없는 경우 예상건수에 대한 비율 (전체가 100일 경우)을 써주십시오.

a	b
---	---

질병, 부상, 사고의 내용	√표	실제(예상) 비율
①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상이나 사고		%
② 폭행이나 폭력에 의한 부상		%
③ 많이 걷고 이동하는 데서 오는 신체적 질병		%
④ 낙상이나 넘어짐과 같은 타박상		%
⑤ 기타(_____)		%
⑥ 기타(_____)		%

3. 귀사는 보험 설계사의 업무와 관련된 질병, 부상, 사고에 대해서 서류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 ① (____) 모두 정리를 함 ② (____) 일부만 정리를 함
- ③ (____) 서류로 보관하지 않음
- ④ (____) 기타 (_____)

4. 보험설계사의 사고, 질병, 부상을 대비해서 회사에서 조치한 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____) 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다.

- ② () 보험설계사를 위해 회사가 100% 부담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였다.
- ③ () 보험설계사를 위해 회사와 보험설계사가 50%씩을 부담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였다.
- ④ () 보험설계사가 스스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다.
- ⑤ ()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
- ⑥ () 기타
()

5. 귀사에서 실제로 보험설계사가 사고, 부상, 질병을 당했을 경우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V표 해주십시오)

- ①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해결하였다.
- ② () 상해보험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 ③ () 장애 정도에 따라 회사에서 개별 보상을 하였다.
- ④ () 당사자가 개인 부담으로 처리하였다.
- ⑤ () 기타
()

6-1. ‘업무기인성’ 혹은 ‘업무관련성’이라고 할 때, 보험설계사의 사고·부상·질병에 대해서 ‘업무기인성’이나 ‘업무관련성’ 여부의 파악이 가능한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100건 중 ()건 정도는 업무기인성이나 업무관련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6-2. 만일 파악할 수 있다면, 무엇을 통하여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설문에 응해주시는 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응답자의 성명은 무엇입니까? (_____)
2. 응답자의 소속 직장은 어디입니까? (_____))
3. 응답자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_____)
4. 응답자의 근속기간은 몇 년입니까? (_____년)
5. 응답자의 연락처를 적어주십시오.
(전화_____ / 이메일 _____)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 조사서

< 골프경기보조원용 설문지 >

안녕하세요.

본 연구는 현재 독립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회사와 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른바 ‘특수고용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은 현재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산업재해보험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부상이나 사고,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산재보험제도 적용은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이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특수고용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인원 파악 및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적용확대가 가능한 것인지, 어떠한 형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본 설문지는 산재보험과 관련한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설문의 시간은 가지고 계신 정보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지만,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경우 대략 8~1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비밀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단, 설문 내용에 따라 추후에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연구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경우 (02)783-8827로 전화를 주시거나 cpark@kli.re.kr로 e-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바쁘신 중 설문응답에 시간을 내주셔서 매우 감사 드립니다.

2001. 9.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찬임

조사표 번호(ID number)	
조사일시	
조사자	

※ 다음의 설문문항 중

a.	b.
----	----

 는 설문문항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설문의 응답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a옆에 √표시를 해주시고, 응답자의 추측에 의한 답변은 b옆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1. 응답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응답하는 경우,

a	√	b
---	---	---

2. 응답자가 추측에 의해서 응답을 하는 경우,

a	b	√
---	---	---

다음 설문문항은 귀사 전체 골프경기보조원에 관한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귀 회사의 전체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a	b
---	---

직원(임시직 포함, 골프경기보조원 제외)의 수 (_____명)

1-2. 귀 회사의 골프경기보조원은 전체 몇 명입니까?

a	b
---	---

① 전체 (_____명)

② 남성/여성 골프경기보조원의 비율 (남성____% 여성____%)

2. 귀 회사 골프경기보조원의 직위별 구성과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 ※ 정규회사 직원을 제외한 골프경기보조원의 상태에서 가능한 직위에 한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하루 몇 시간 정도 됩니까?

(하루에 _____시간)

4-1. 귀사의 골프경기보조원의 수입은 특정한 월이나 계절에 대해서 차이를 보입니까? (√ 표시)

① (____) 그렇다.(4-2로) ② (____) 아니다.(5-1로)

4-2. 골프경기보조원의 수입에 차이가 날 경우 가장 수입이 가장 많은 달(계절)은 언제이며, 가장 적은 달(계절)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a	b
---	---

① 가장 많이 수입을 올리는 달(계절), (_____)

② 가장 적게 수입을 올리는 달(계절), (_____)

③ 두 달(계절)의 대강의 수입의 차이는 (_____만원) 정도이다.

5-1. 귀사에서 골프경기보조원은 겸업(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하고 있습니까?

① (____) 회사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 겸업을 하고 있는 골프경기보조원은 거의 없다.

② (____) 회사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부 겸업을 하고 있는 골프경기보조원이 있다.

③ (____) 회사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겸업을 하고 있는 골프경기보조원은 거의 없다.

④ (____) 회사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겸업을 하고 있는 골프경기보조원이 있다.

⑤ (____)

기타

(

_____)

5-2. 귀사에서 골프경기보조원이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몇 %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체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 실제 일어난 발생건수나 자료가 없는 경우 예상건수에 대한 비율을 써주십시오.

a	b
---	---

질병, 부상, 사고의 내용	√표	실제(예상) 비율
① 골프공이나 골프채로 인한 부상이나 사고		%
② 폭행이나 폭력에 의한 부상		%
③ 많이 걷고, 무거운 것을 드는 데서 오는 신체적 질병		%
④ 낙상이나 넘어짐과 같은 타박상		%
⑤ 기타()		%
⑥ 기타()		%

4. 골프경기보조원의 사고, 질병, 부상을 대비해서 회사에서 조치한 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 캐디회사(양성소/학원)에서 골프경기보조원을 위해 산재보험·상해보험을 가입하였다.
- ② () 골프경기보조원을 위해 본 회사가 100% 부담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였다.
- ③ () 골프경기보조원을 위해 본 회사와 골프경기보조원이 50%씩 부담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였다.
- ④ () 골프경기보조원이 스스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 ⑤ () 강제는 아니지만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⑥ ()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
- ⑦ ()기타()

5. 귀사에서 실제로 골프경기보조원이 사고, 부상, 질병을 당했을 경우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V표 해주십시오)

- ①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해결하였다.
 ② () 상해보험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③ () 부상·질병 정도에 따라 회사에서 보상을 하였다.
 ④ () 경기중 사고의 경우 손님(가해자)이 피해보상을 해주었다.

⑤ () 당사자가 개인 부담으로 처리하였다.

⑥ () 기타 ()

6-1. 업무와 관련되어 일어난 사고나 질병, 부상을 ‘업무기인성’ 혹은 ‘업무관련성’이라고 할 때, 골프경기보조원의 사고·부상·질병에 대해서 ‘업무기인성’이나 ‘업무관련성’ 여부의 파악이 가능한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100건 중 ()건 정도는 업무기인성이나 업무관련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6-2. 만일 파악할 수 있다면, 무엇을 통하여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

설문에 응해 주시는 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응답자의 성명은 무엇입니까? (_____)
2. 응답자의 소속 직장은 어디입니까? (_____)
3. 응답자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_____)
4. 응답자의 근속기간은 몇 년입니까? (_____ 년)
5. 응답자의 연락처를 적어주십시오.
(전화 _____ / 이메일 _____)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③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 조사서

< 학습지교사용 설문지 >

안녕하세요.

본 연구는 현재 독립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회사와 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른바 ‘특수고용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은 현재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부상이나 사고,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산재보험제도 적용은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이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특수고용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인원 파악 및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적용확대가 가능한 것인지, 어떠한 형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본 설문지는 산재보험과 관련한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설문 시간은 가지고 계신 정보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지만,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경우 대략 8~1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비밀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단, 설문 내용에 따라서 추후에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연구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경우 (02)783-8827로 전화를 주시거나, cpark@kli.re.kr로 e-메일을 보내주세요.

바쁘신 중 설문응답에 시간을 내주셔서 매우 감사 드립니다.

2001. 9.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찬임

조사표 번호(ID number)	
조사일시	
조사자	

※ 다음의 설문문항 중

a.	b.
----	----

는 설문문항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설문의 응답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a옆에 √표시를 해주시고, 응답자의 추측에 의한 답변은 b옆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1. 응답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응답하는 경우,

a	√	b
---	---	---

2. 응답자가 추측에 의해서 응답을 하는 경우,

a	b
---	---

√

다음 설문문항은 귀사 전체(지국포함)의 학습지교사에 관한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귀 회사의 전체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a	b
---	---

직원(임시직 포함, 학습지교사 제외)의 수 (_____명)

1-2. 귀 회사의 학습지교사는 전체 몇 명입니까?

a	b
---	---

① 전체 (_____명)

② 남성/여성 학습지교사의 비율 (_____명/(혹은) _____%)

2. 귀 회사 학습지교사의 직위별 구성과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 ※ 단, 정규 회사 직원을 제외한 학습지교사의 상태에서 가능한 직위에 한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가장 높은 직위 ← ← 중간 직위 → → 가장 낮은 지위			
직위	지점장	차장	팀장	일반교사
예상 총수입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고정수당 수	5개	4개	3개	2개
명수(혹은 %)	60명	300명	600명	1200명
예상진급기간	8년	4년	2년	입사후

▷ 귀사에 관한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a	b
---	---

	가장 높은 직위 ← ← 중간 직위 → → 가장 낮은 지위			
직위				
예상 총수입				
고정수당 수				
명수(혹은 %)				
예상진급기간				

3-1. 귀사의 학습지교사는 일반적으로 주당 며칠을 일까? (√ 표시, ⑤제외)

- ① () 주당 6일 이상
- ② () 주당 5일
- ③ () 주당 4일
- ④ () 주당 3일 이하

⑤ () 기타 (적어주십시오 _____)

3-2. 귀사의 학습지교사 1인이 관리하는 학생은 어느 정도나 되며, 그 경우 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나 걸립니까?

1인당 담당학생의 수	해당 교사 비율	하루 평균 (예상) 소요시간
99명 이하	%	시간
100~149명	%	시간
150~199명	%	시간
200명 이상	%	시간

4-1. 귀사의 학습지교사의 수업은 특정한 월이나 계절에 대해서 차이를 보입니까? (✓ 표시)

- ① () 그렇다.(4-2로)
 ② () 아니다.(5-1로)

4-2. 학습지교사의 수업에 차이가 날 경우 가장 수업이 가장 많은 달(계절)은 언제이며, 가장 적은 달(계절)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a	b
---	---

- ① 가장 많이 수업을 올리는 달(계절), ()
 ② 가장 적게 수업을 올리는 달(계절), ()
 ③ 두 달(계절)의 대강의 수업의 차이는 ()만원 정도이다.

5-1. 귀사에서 학습지교사는 겸업(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하고 있습니까?

- ① () 회사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 겸업을 하고 있는 학습지교사는 거의 없다.
 ② () 회사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부 겸업을 하고 있는 학습지교사가 있다.
 ③ () 회사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겸업을 하고 있는 학습지교사는 거의 없다.

④ () 회사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겸업을 하고 있는 학습지교사가 있다.

⑤ ()

기

타

(_____)

5-2. 귀사에서 학습지교사가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몇 %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a	b
---	---

 전체의 (_____ %)

6. 다음은 학습지교사의 근속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a	b
---	---

근속기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현재 귀사의 전체 학습지교사를 근속기간별로 해당 비율을 써 주십시오.	%	%	%	%	%

7-1. 귀사는 학습지교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① () 그렇다.(7-2로)

② () 없다.(8로)

7-2. 계약기간이 있으시다면, 통상적으로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평균 _____년 _____개월)

8. 귀사에서 학습지교사에 제공하는 복지 및 제반 혜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귀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련된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기타)란에는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시간외수당		정기건강진단		출산/육아휴가	
교통비		해외연수		탁아비용	
피복비		주 1회 휴가		상해(손해)보험	
식사비		생리휴가		연금보조	
상여금		의료보험		(기타)	
퇴직금		국민연금		(기타)	
휴가비용		고용보험		(기타)	
자녀학자금		산재보험		(기타)	

9. 귀사는 학습지교사가 회사로부터 받게 된 소득(각종 수당)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계십니까?

- ① () 그렇다. ② () 없다.

다음은 귀사의 학습지교사의 업무에 관련된 질병, 부상, 사고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작년 1년 동안(2000년 1월~2000년 12월 31일) 학습지교사에게 업무에 관련된 질병, 부상, 사고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혹은 추정하십니까)?

a	b
---	---

총 () 건 발생

2. 학습지교사에 발생되었던 업무에 관련된 질병, 부상, 사고는 대체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 실제 일어난 발생건수나 자료가 없는 경우 예상건수에 대한 비율(전체가 100일 경우)을 써 주십시오.

a	b
---	---

질병, 부상, 사고의 내용	√표	실제(예상) 비율
①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상이나 사고		%
② 폭행이나 폭력에 의한 부상		%
③ 많이 걷고 이동하는 데서 오는 신체적 질병		%
④ 낙상이나 넘어짐과 같은 타박상		%
⑤ 기타()		%
⑥ 기타()		%

3. 귀사는 학습지교사의 업무와 관련된 질병, 부상, 사고에 대해서 서류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 ① () 모두 정리를 함
- ② () 일부만 정리를 함
- ③ () 서류로 보관하지 않음
- ④ () 기타 ()

4. 학습지교사의 사고, 질병, 부상을 대비해서 회사에서 조치한 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 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다.
- ② () 학습지교사를 위해 회사가 100% 부담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였다.
- ③ () 학습지교사를 위해 회사와 학습지교사가 50%씩을 부담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였다.
- ④ () 학습지교사가 스스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다.

⑤ ()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

⑥ () 기타

(_____)

5. 귀사에서 실제로 학습지교사가 사고, 부상, 질병을 당했을 경우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V표 해 주십시오)

①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해결하였다.

② () 상해보험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③ () 장애 정도에 따라 회사에서 개별 보상을 하였다.

④ () 당사자가 개인 부담으로 처리하였다.

⑤ () 기타

(_____)

6-1. 업무와 관련되어 일어난 사고나 질병, 부상을 ‘업무기인성’ 혹은 ‘업무관련성’이라고 할 때, 학습지교사의 사고·부상·질병에 대해서 ‘업무기인성’이나 ‘업무관련성’ 여부의 파악이 가능한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100건 중 (_____)건 정도는 업무기인성이나 업무관련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6-2. 만일 파악할 수 있다면, 무엇을 통하여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설문에 응해 주시는 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응답자의 성명은 무엇입니까? (_____)
2. 응답자의 소속 직장은 어디입니까? (_____)
3. 응답자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_____)
4. 응답자의 근속기간은 몇 년입니까? (_____ 년)
5. 응답자의 연락처를 적어주십시오.
(전화 _____ / 이메일 _____)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

농업종사자 산업재해에 대한 실태조사						
응답자 이름		지역	도	군		
성별	1. 남 2. 여	면접원 이름			에디팅	검증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리서치연구소 면접원 ○○○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농사일 중 부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농민의 재해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님의 응답은 전체 이직자의 몇 %라는 식으로 통계처리되며, 개인적인 사항은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 11월

조사 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대행 : 현대리서치연구소(Tel : 02-564-6854)

SQ1. ○○님은 농사일을 하고 계십니까?

- 1) 그렇다
- 2) 아니다(→ 면접 중단)

SQ2. 죄송하지만 만으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 만19세 이하 면접 중단)

만 □ 세

다음은 귀하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문 1. ○○님께서 제일 많이 짓는 농사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1) 벼
- 2) 보리, 밀
- 3) 감자, 고구마
- 4) 잡곡(조, 수수, 옥수수,

매달)

- 5) 채소류(과채, 엽채, 근채) 6) 과일
 7) 특용작물(깨, 땅콩, 약용작물)
 8) 기타 _____

문 2. ○○님이 농사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년	개월
---	----

문 3. 현재 함께 사는 가족은 ○○님을 포함하여 몇 명입니까?

명

문 4. 가족 가운데, 본업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본인 포함)

명

문 5. ○○님께서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농기구는 무엇입니까?(면접원은 보기를 모두 불러주세요)

- 1) 경운기 2) 트랙터 3) 이앙기
 4) 양수기 5) 바인더 6) 탈곡기
 7) 콤바인 8) 건조기 9) 분무기
 10) 살분무기 11) 관리기 12) 기타 _

문 6-1. ○○님께서 지난 1년간 농기계로 인한 사고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농기계 사고 응답받으세요) 2) 없다

문 6-2. ○○님께서 지난 1년간 농약으로 인한 사고나 질병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농약 사고 응답받으세요) 2) 없다

문 6-3. ○○님께서 지난 1년간 농기계나 농약으로 인한 사고말고, 농사일 중 다치거나 작업도중 뱀이나 개에게 물리는 등 사고나 부상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 1) 있다(☞기타 사고 응답받으세요) 2) 없다

다음은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7. ○○님께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를 겪으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년	월
---	---

(☞ 면접원 : 2000년 11월 이전 사고는 이하 ‘농기계사고’ 질문 중단)

문 8. 농기계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났습니까?

- 10) 하반신 전신 11) 상반신 12)
 13) 기타 _____

문 12. 치료는 어떻게 하셨으며, 총 며칠이나 걸렸습니까?

	총 일
--	--------

(☞ 면접원 : 전체 일수와 아래 일수의 합이 맞아야 합니다)

- 1) 집에서 치료

	약 일
--	--------

 2) 통원치료

	약 일
--	--------

 3) 입원치료

	약 일
--	--------

문 13.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현재 치료중인 경우, 예상 비용까지 포함)

	만		천원
--	---	--	----

문 14. 사고를 당한 후 일하는 데 어느 정도 지장을 받았습니까?

- 1) 장애가 남았다
 2) 일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
 3) 일하는 데 다소 지장이 있었다
 4) 완치되었다

농약으로 인한 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5. ○○님께서 농약으로 인한 사고를 겪으신 때는 몇 월이었습니까?

년	월
---	---

(☞면접원 : 2000년 11월 이전 사고는 이하 '농약사고' 질문중단)

문 16. 어떤 증상이 있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 | | |
|-----------------------------------|-----------------------------------|------------------------------------|
| <input type="checkbox"/> 1) 현기증 | <input type="checkbox"/> 2) 두통 | <input type="checkbox"/> 3) 구토증세 |
| <input type="checkbox"/> 4) 피부염 | <input type="checkbox"/> 5) 호흡곤란 | <input type="checkbox"/> 6) 복통 |
| <input type="checkbox"/> 7) 설사 | <input type="checkbox"/> 8) 시각장애 | <input type="checkbox"/> 9) 수족의 경련 |
| <input type="checkbox"/> 10) 심한발한 | <input type="checkbox"/> 11) 요통증세 | <input type="checkbox"/> 12) 신경장 |

해

- 13) 기타 _____

문 17. 중독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오랜 시간 살포 | <input type="checkbox"/> 2) 복장미비 |
| <input type="checkbox"/> 3) 고중독성 농약의 사용 | <input type="checkbox"/> 4) 취급부주의 |
| <input type="checkbox"/> 5) 살포작업미숙 | <input type="checkbox"/> 6) 기타 _____ |

문 18. 치료는 어떻게 하셨으며, 총 며칠이나 걸렸습니까?

	총 일
--	--------

(☞ 면접원 : 전체 일수와 아래 일수의 합이 맞아야 합니다)

1) 집에서 치료

	약 일
--	--------

2) 통원치료

	약 일
--	--------

3) 입원치료

	약 일
--	--------

문 19.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현재 치료중인 경우, 예상 비용까지 포함)

	천원
만	

문 20. 농약중독 후, 일하는데 어느 정도 지장을 받았습니까?

- 1) 장애가 남았다
- 2) 일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
- 3) 일하는 데 다소 지장이 있었다
- 4) 완치되었다

기타 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21. ○○님께서 사고나 질병을 겪으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년	월
---	---

(☞면접원 : 2000년 11월 이전 사고는 이하 '기타사고' 질문중단)

문 22.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1) 칼 2) 낫 3) 팽이나 도끼
 4) 뱀에게 물림 5) 벌에 쏘임 6) 감전사고
 7) 기타 _____

문 23. 치료는 어떻게 하셨으며, 총 며칠이나 걸렸습니까?

총	
일	

(☞ 면접원 : 전체 일수와 아래 일수의 합이 맞아야 합니다)

1) 집에서 치료

	약
	일

 2) 통원치료

	약
	일

3) 입원치료

	약
	일

문 24.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현재 치료중인 경우, 예상 비용까지 포함)

만	천원
---	----

문 25. 사고나 질병 후 일하는 데 어느 정도 지장을 받았습니까?

- 1) 장애가 남았다
- 2) 일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
- 3) 일하는 데 다소 지장이 있었다
- 4) 완치되었다

다음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과 대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26. 【사고 경험자만】 ○○님은 앞서 말씀하신 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1) 농협의 공제나 보험을 통해 해결함
- 2)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보았다(가족이 가입한 것 포함)
- 3) 가족, 친척이나 이웃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 4) 빚을 얻어 해결하였다
- 5) 생활보호자이어서 정부에서 의료비를 내주었다
- 6)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이 배상해 주었다
- 7) 집에 있던 돈이나 저축으로 해결
- 8) 기타 _____

문 27. 귀하는 현재 농사일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2-1. 농협·농작업 사고 공제에 가입

- ① 본인 가입 ② 가족이 가입 ③ 아니오

2-2. 민간(상해, 생명)보험에 가입

- ① 본인 가입 ② 가족이 가입 ③ 아니오

2-3. 저축

- ① 본인 가입 ② 가족이 가입 ③ 아니오

문 28. 【만 60세 미만】 현재 국민연금을 내고 계십니까?

- 1) 예 2) 아니오

문 29. 【만 60세 이상만】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까?

- 1) 예 2) 아니오

문 30. ○○님께서서는 현재 의료보험료(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십니까?

- 1) 예 2) 아니오

문 31. ○○님께서서는 ‘산재보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1) 잘 알고 있다 2) 들어본 적 있다
 3) 처음 듣는다

문 32. 산재보험은 현재 직장인들이 의료보험(건강보험)과는 별도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와 함께 일당을 지급하며, 장애가 생겼을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만약 농민에게도 산재보험이 실시된다면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가입의향 있음(☞문32-1번으로)
- 2) 가입의향 없음(☞문33로)

문 32-1. 산재보험 보험료가 의료보험(건강보험) 비용과 별도로 한 달에 ○○○원이라면 ○○님께서도 가입하시겠습니까?

(면접원 : 가입의향이 없을 때까지 보기를 불러주세요.)

보험료	가입함	가입하지 않음
1) 5,000원 미만		
2) 5,000~10,000원 사이		
3) 10,000~15,000원 사이		
4) 15,000~20,000원 사이		
5) 20,000원 이상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

DQ1. ○○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무학
- 2) 초졸
- 3) 중졸
- 4) 고졸
- 5) 전문대졸
- 6) 대졸
- 7) 대학원졸

DQ2. 실례지만, 귀하의 월평균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현재 동거가구원의 소득 포함)

